

E02-2009-03/2009.10

제11권 제3호/Vol. 11 No. 3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연구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한보영 boyoung@krei.re.kr	02-3299-4374

목 차

□ 포커스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지원 방향 /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24 | 6. 농업기반 / 49 |
| 2. 벼농사 / 30 | 7. 산 림 / 54 |
| 3. 밭농사 / 36 | 8. 기타 작물 / 58 |
| 4. 감자농사 / 41 | 9. 기타 보도 동향 / 62 |
| 5. 축 산 / 44 |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83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83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97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98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25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25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29
- 북중 교역 동향 / 141
 - 1.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 141
 - 2.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 144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49

포커스

-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지원 방향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지원 방향¹⁾

김 수 압

(연구위원, sakim@kinu.or.kr)

이명박 정부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지원에 접근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인도주의 정신의 구현과 남북관계 개선 및 관리라는 복합적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인도주의 목표 구현을 위한 지원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로 인해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효과는 미흡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수요 산정에 입각한 사업기획, 지역 개방, 주민 참여형 지원, 지원효과에 대한 평가제도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인도주의 목표의 구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대북지원을 추진할 때 '삶의 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첫째,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중심의 식량권, 의료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삶의 질에 접근해야 한다. 둘째, 빈곤의 복합성, 다면적 성격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인간개발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접근해야 한다. 넷째, 사회개발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개발과 권리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대북지원에 접근해야 한다. 여섯째,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쌍무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남한 사회의 책무를 다하되, 인도주의 목표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인도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당국의 책무성으로서 인도주의 원칙의 수용과 지역의 개방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를 촉구해나가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을 확대·다각화하고 지역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대북지원의 규모는 지역개방의 수준에 따라 결정해나가야 한다. 셋째, 개발지원으로 전환하고 북한주민의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파리원조 5대원칙 등 국제규범을 수용하여 북한의 정책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입각하여 개발과 인권을 통합하고 개발지원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1)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009.9.21)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힌다.

1. 서 론

북한이 스스로 인도적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1995년부터 대북지원에 동참한 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대북지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갈등의 양상마저 보여 왔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대북지원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대북지원을 통하여 북한 내 인도적 위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되고 있는가? 실제로 지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아니면 역설적으로 북한정권의 안정에 기여한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퍼주기’로 대변되는 이러한 논쟁이 야기된 본질적인 요인은 북한체제의 폐쇄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수요 산정과 현장접근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규범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원의 필요성은 국내적 논쟁을 유발하여 왔다.

15년에 걸친 지속적인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내에 인도적 위기는 근본적으로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대북지원이 필요한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여 대북지원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대북정책 추진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 대북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정부 시절 대북지원의 목표를 살펴보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준에서 실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대북지원을 추진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삶의 질’을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논의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북지원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 목표와 삶의 질

2.1 대북지원 목표

노무현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비료지원, 식량차

관, 수해 등 긴급구호지원, 취약계층 지원, 민간의 활동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통일백서』(2002~2005)를 통하여 첫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줌으로써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둘째, 남북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동포애를 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고 있다.²⁾ 이러한 설명에서 보듯이 노무현 정부는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준다는 인도주의 정신의 구현과 남북관계 관리 및 개선이라는 복합적 지원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의 ‘먹고 사는 권리’(right to food and nutrition) 등 북한주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신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여 왔다.³⁾

대북지원을 통해 복합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목표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는가? 2003년 5월 “대북 쌀 제공 관련 해설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대북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의 구현보다는 남북관계 관리와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⁴⁾ 첫째,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이어지게 함으로써 북핵문제로 인한 대내외 위기감 확산 방지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한다. 둘째,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을 남북대화로 유도하고, 남북대화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셋째,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라는 중장기 전략적 목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넷째, 대북 식량지원 시 우리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식량지원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보듯이 북한주민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는 인도주의의 구현보다는 북한 당국에 이득을 주어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적 거래의 성격이 강하였다.⁵⁾

2.2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복합적 대북지원 목표의 하나인 인

2) 통일부, 『통일백서 2005』, p. 160.

3) 통일부, 『통일백서 2008』, p. 240.

4) 통일부, “대북 쌀 제공 관련 해설자료” (2003. 5).

5)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KINU학술회의 총서 09-01, 『북핵 문제 해결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45, 59.

도주의 정신은 어느 정도로 구현되고 있는가? 첫째, 북한 내 전반적 인도적 위기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인도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지원이 확대된 결과 2000년 이후 북한에서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최악의 인도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대북지원이 인도적 위기 해소에 실질적으로 공헌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⁶⁾

둘째, 인도적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를 기준으로 인도주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료 지원의 결과 식량생산이 증대되고 식량차관을 통해 전반적인 식량 총량이 증가하여 장마당의 식량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도적 지원은 지원물자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감시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 및 관리에 우선적 목표를 둠으로써 노무현 정부는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형식적 수준만을 요구하였다. 식량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규정, 전달과정과 배분결과 등 인도주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북지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반면, 북한은 남북대화라는 정치적 대가를 명분으로 지원 물품은 최대한 확보하되 주민접촉을 최소한으로 차단하는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분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수준의 모니터링으로 제공된 식량이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 지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대북지원의 실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을 둘러싼 분배투명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례 심층 인터뷰에서 대부분 대북지원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령했다는 증언은 들어보기 어려웠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내 인도적 위기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지만 북한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수혜 취약계층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인도주의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경제적 권리 신장이라는 대북지원의 또 다른 목표도 제대로 달성되기 어려웠다.

6) 최대석, “대북지원 논의의 현황과 과제,” 민화협 제2차 화해 공영포럼, 『남북관계와 인도주의: 현황과 전망』, 2009.8.25.

2.3 대북지원과 북한당국의 책무성

식량차관과 비료 지원,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을 통해 한국 사회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동포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왔다. 그런데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위기 해소의 본질적인 책무는 북한당국에 있다. 그렇다면 대북지원의 장기화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북한당국의 책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는지의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대남의존성이 증대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 간 접촉면이 확대되고 북한 지도층 및 주민들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접하게 함으로써 대남 우호적 인식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체제가 외부에 개방하도록 하는 간접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⁷⁾

그런데 대북지원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북한변화의 질적 내용이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개방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변화의 질적 내용, 즉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책무성은 우리가 언제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와 직결된 문제이다.

남북한 분단의 상황 속에서 통합의 대상이자 파트너인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성적인 식량부족 국가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스스로의 해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회적 지원을 넘어 인도적 지원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장기적 인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북한당국의 의지와 역량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대북지원을 활용하였지 북한 내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북한당국의 의지와 역량형성에는 소홀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의 의지와 정책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원조를 당연시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자체적으로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책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⁸⁾

7) 김근식, “퍼주기 논란과 대북지원의 정당성,” 『인물과 사상』, 2006.

8) 이러한 현상에 대해 ‘원조의 저주’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형중, 국민일보 2007.08.30.

2.4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삶의 질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당국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전달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간차원의 지원도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갖는데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에서도 인도주의 원칙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지원 사업이 기획될 때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당국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하여 수요파악을 토대로 하는 사업기획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식량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분배구조, 주민들의 경제난 대응방식 등을 검토하여 취약계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수요 산정에 의해 사업을 기획하지 못함으로써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수혜가 가는 지원사업보다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특히 북측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이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도적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민간단체들이 수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사업의 지속성과 북한과의 접촉 유지를 위해 수요 산정에 따른 사업기획 요구 등 북한 태도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둘째, 민간단체 사업의 평양 편중이 지속되면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방정책에는 지역의 개방이라는 공간적 차원과 북한주민의 개발참여라는 인적 개방의 2가지 범주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취약지역 지원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데,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평양 이외 지역으로 일부 사업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평양 중심으로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 여전히 평양 등 일부 개방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취약인구집단인 동북부 산간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단체가 집중해야 할 지방중심의 취약지역 대상 소규모 지원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편중 지원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당국이 북한주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지역개방에 소극적 태도를 확고하게 견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개별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지역개방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는데 우리 민간단체들은 지역개방을 위한 협력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왔다.

셋째, 북한주민의 참여를 통한 참여적 개발지원(participatory development)이 이루

어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개발지원의 성격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개발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민화협 등으로 창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전문기관, 직접 수혜자인 북한주민의 참여 등이 제약을 받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화협 참사들이 사업 파트너가 됨으로써 북한 내 전문기관의 참여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기술전수, 교육 등 역량 구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월드비전의 예에서 보듯이 기술이전과 교육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농업기술 이전이나 인력교류 등 농업개발 역량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추상적으로 제시되는데 그치고 있어 소규모 지역 단위의 역량 개발과 제도 변화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지원을 위해 개방된 지역에서도 북한주민의 참여 속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넷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이 개발지원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개발지원을 수용할 북한당국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북한당국의 능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유엔 인도기구와 유럽 지원NGO에 대해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상정하는 개발지원의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발지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제사회는 파리 원조 5대원칙, OECD DAC 5대 평가기준,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에서 보듯이 참여적 개발과 인간개발, 사회개발 등의 개념과 결합된 개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규모의 확대와 북한 상층부의 이해가 반영된 개발지원을 상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합동사업을 통해 지역 단위 종합 개발모델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단일 단체의 개별사업으로 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 여러 단체들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단순히 주관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여러 단체 개별사업의 단순조합에 그치는 한계에 봉착한 바 있다.

다섯째,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사업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개발협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접근(방문), 주민 접촉(참여), 평가(참여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된다. 현재 분배투명성 확인을 위해 각 민간단체들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북측의 비협조적 태도와 우리 단체의 평가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토대로 한 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당국은 현장 접근과 주민접촉을 불허하고 지원효과 평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분배투명성이 여전히 ‘현지 확인’(see)이라는 인식 아래 민간단체는 사업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장비·기기 지원이나 병원 건립사업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우리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대북지원을 실시한다고 할 때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우선적으로 식량권과 의료권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신장에 역점을 두고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사회적 권리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규정할 경우 권리의 수혜 대상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권리 수혜의 대상은 취약지역, 취약계층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권리 관점에서 삶의 질을 규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도적 성격의 지원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protect)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개발지원을 통하여 권리를 ‘신장’(promotion)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은 국제사회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빈곤의 복합성, 다면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해나가야 한다. 현재 국제지원 공동체 사이에는 재화의 결핍이라는 기본적인 빈곤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 착취와 같은 빈곤을 유발하는 복합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의 저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박탈, 취약성, 주변화, 배제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빈곤이 구조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는 빈곤은 그 자체로서 인권침해인 동시에 인권침해의 요인이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⁹⁾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도 빈곤에 대해 “충분한 생활수준과 다른 시민적·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자원, 역량, 선택, 안전, 권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박탈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빈곤이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빈곤완화를 지원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복합적 빈곤요인의 관점에서 대북지원에 접근할 경우

9) Thomas Pogge, (ed.), *Freedom from Poverty as a Human Ri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북한주민 삶의 질은 단순한 소득 증대를 통하여 향상될 수 없다. 성장 중심적 개발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빈곤의 복합적 요인의 해소를 통해 주민의 삶을 진정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어렵게 된다. 앞으로 빈곤퇴치를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북지원은 소득 빈곤을 포함한 빈곤을 유발하는 더 넓은 의미의 능력 박탈의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설 경우 북한주민은 자선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참여와 권한강화(empowerment)를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스스로 증진시켜 나가는 주체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지원 초기 자선적 관점에서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여 왔다. 자선적 접근을 할 때 사람들은 수혜자로 인식되면서 변화의 주체로 설정되지 않았다. 반면, 유엔개발계획 등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인간개발은 단순 수혜자라는 관점을 벗어나 인간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기회에 중점을 두고 개발에 접근하는 방식이다.¹⁰⁾ 즉, 인간개발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져야 할 선택에 초점을 둔다. 사람들의 선택 확장을 통해 실천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행동지향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개발 개념을 수용하여 북한주민의 선택과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개발의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사회개발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개발로부터 혜택을 받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규범과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 방식이다. 사회개발에서는 사람의 역량이 강화되고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과 제도적 측면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개발에서는 사회적 배제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에 중점을 둘 경우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취약 계층의 생계와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관계망, 제도,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¹¹⁾ 따라서 향후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과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개발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싹트고 확산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각적 필요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개발을 통합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

10)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human rights and human development*, 2000.

11) Gloria Davis, *A History of the Social Development Network in The World Bank, 1973-2002*, World Bank, Social Development Papers No. 56, 2004.

하게 개선되어 왔다. 1977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을 개발과정에 투영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1997년 시작된 유엔개혁프로그램에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시스템 내의 모든 기구들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인권을 주류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유엔기구들이 개발협력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하였고 그 운용과정에서 경험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권과 개발은 상호강화(mutually reinforcing)하는 작용을 한다는 개념이 정립될 수 있었다¹²⁾ 앞으로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경제적·사회적 권리 신장을 넘어 인권과 개발의 통합이라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안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1년 1월 설립된 인간안보위원회는 2003년 5월 『인간안보의 현재: 보호와 권능강화』(Human Security Now: Protecting and Empowering People)라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인간안보의 목적은 인간의 자유와 성취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인간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안보는 인간의 생존, 인간다운 삶,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 사회, 환경, 경제, 군사, 문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보고서에서 인간안보의 이념은 인간개발과 인권에 잘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안보는 인권을 증진시키고 인간개발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가안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인간안보와 인간개발은 모두 근본적으로 장수, 교육, 참여를 위한 기회 등 인간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4. 북한주민의 삶의 질과 대북지원 추진 방향

4.1 식량과 비료 지원: 인도주의 목표 구현과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

정부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복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주민을 긴급히 기아로부터 구호하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목표를 충실하게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지원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2) Philip Alston and Mary Robinson, eds.,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owards Mutual Reinforce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007년 4월 평화재단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추진한 「대북인도지원법」에서 규정한 2가지 정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당국이 아니라 취약계층 또는 북한정부가 개방한 지역이 아니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인도지원은 대상주민에게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로 이루어져야 한다.¹³⁾ 즉, 식량지원의 경우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인도주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그동안 차관으로 지원되던 쌀이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무상으로 지원될 경우 지원대상이 북한주민이며, 전달과정과 배분결과 등 인도주의적 긴급구호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원과정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엔에서 통용되는 원칙의 적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유엔은 지원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정에 의한 요구(assessed needs)를 통해 전반적인 위기상황이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인도적 지원이 전달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위기상황의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접근이 허용되는 지역에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최소한 2가지 요소가 반영되어야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 첫째,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선정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 실태는 전반적인 식량 수급 실태와 함께 지역별 영양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주민이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선정이 북한과의 공식 협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식량을 지원하는 경우 하역장에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무상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경우, 최소한 주요 시·군 단위지역에서 식량이 배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군 지역에서 분배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량이 제공되는 시점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체 지원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양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규모 식량지원의 경우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라는 복합적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노무현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3) 박형중,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념의 혼란,”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09.9.14.

14) Hazel Smith, *Overcoming Humanitarian Dilemmas in the DPRK*, Special Report 90,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2.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지원 제공의 조건부과 및 연계와 인도주의 원칙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남북대화의 재개,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전제로 대북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조건부과이고 연계정책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인도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대북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왔다. 반면 인도주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건이 아니라 당위적 성격의 국제규범이다. 따라서 인도지원을 수용할 경우 북한당국은 인도주의 원칙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남북 사이의 지원에도 특수성보다 인도주의 원칙이라는 국제규범이 존중되어야 한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협의 과정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인도주의 국제규범을 수용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촉구해나가야 한다.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해나가되, 인도적 지원의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책무성을 강조해나가야 한다. 즉, 대규모 식량을 지원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당국의 정책변화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량 제공은 단순구호 차원의 증세완화 정책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개념적 전환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식량이 북한의 필요계층에 도달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되, ‘무상 식량지원 대 모니터링 확보’라는 등식과 더불어 ‘식량지원 대 북한의 정책개선’의 등식도 고려해야 한다.¹⁵⁾ 특히 비료 지원의 경우 북한당국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변화에 대한 의지를 전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는 경우 최소한 협동농장의 운영 방식 등 농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요구해나가야 한다. 이는 연계전략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의 장기화에 따른 북한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북한 내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북한당국의 책무성 이행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2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및 지역 개방의 확대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의 문제로서 상대적으로 전용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 임신부, 노약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지원품목이 확대되고 지원 방식이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과 빈곤한 일반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지원방식이 변화되도록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15)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pp. 85~86.

한다. 특권도시인 평양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으로의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지방 개방의 수준과 병행하여 지원의 수준을 정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개방을 통한 취약지역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는 민간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나가되, 정부가 대북지원 협상 과정에서 지역 단위에서 민간단체가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강하게 설득해나가야 한다. 또한 평양 혹은 개성에 민간단체 공동 상주사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북한당국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간단체도 지방으로의 지원확대와 현장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북한당국에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협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간 보다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보다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북협상 전략은 인도주의 원칙의 강화, 지방 개방,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식량 지원의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북한의 수용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결정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 개방→ 주민 접촉→ 평가 수용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식량지원과 비료 지원의 경우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그 규모를 결정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은 지방 개방 수준, 현장접근, 수혜자 등을 고려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을 확대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지방개방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경우 식량과 비료 지원의 경우 지방단위의 소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지방을 개방할 경우 농업협력 사업은 농촌분야 종합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해나가도록 지원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한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북한주민의 참여 및 교육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역량 형성 방안도 프로젝트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4.3 개발지원과 북한의 역량 형성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식량난의 근본원인이 자연

재해가 아닌 구조적인 경제난에 기인하며, 체제의 변화, 즉 개혁과 개방이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개발지원으로의 전환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일부 민간단체는 개발지원 성격의 사업들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본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성격의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의 필요하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경우 추진하게 될 5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은 개발지원을 통해 달성해나갈 수 있다. 개발지원을 추진할 경우 인도적 지원과 달리 북한의 제도나 정책변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북개발지원은 빈곤의 복합적·다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되 북한주민의 역량 강화, 인간개발, 사회개발을 적극 수용해나 가야 한다. 특히 개발지원이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고 반영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원칙을 원용하여 대북지원 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과 북한체제라는 특수성 중심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다만, 원칙에 충실하되,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대북정책 추진원칙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원칙들을 원용하되, 북한의 실정에 맞게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야 한다. 개발협력을 지향하는 대북지원을 추진하게 된다면 2005년 3월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원용하여 북한의 역량 형성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동 선언에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정책의 연계, 공여국간 원조절차 및 실행의 조화, 성과 중심의 관리, 상호 책무성 등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¹⁶⁾ 동 원칙에서 보듯이 대북지원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인의식의 제고, 북한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이 스스로 개발 우선순위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득해나가야 한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내 개혁·개방의 역량과 의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개발협력 수용역량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북한 당국의 협력수준에 따라 대북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책변화와 연계하여 개발지원의 수준을 결정해나가야 한다. 첫째, 북한의 불균등 발전전략의 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비릿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과 개발과정의 불균형 요소(inequity factor)를

16)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Joint Progress Toward Enhanced Aid Effectiveness; High Level Forum, 2005, 2.

지적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개발과정이 엘리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주변화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를 고수하면서 자원의 왜곡된 배분으로 불균형 개발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⁷⁾ 따라서 개발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인의식 고취와 책무성 관점에서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개발전략을 변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북개발지원의 효과는 북한의 개방 수준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북한의 개혁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북개발지원은 개방에 기여하는 측면과 북한의 개방수준에 상응하여 지원하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발협력 성격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평양 이외 소규모 지역 단위 개방 여부, 주민 접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대북지원을 통해 생존권 신장을 도모한다는 단선적 인과 논리를 벗어나 빈곤의 복합성·다면성, 인간개발, 사회개발 등 국제사회의 논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빈곤의 복합성, 다면적 성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지원과 생존권의 단선적 연계에서 벗어나 인권과 개발은 상호 강화시켜준다 (mutually reinforcing)는 통합된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 차별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한 북한주민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북한주민의 선택과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단순한 소득 증대를 넘어 참여적 개발에 입각한 인간역량의 개발과 권리 의식 제고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북한주민의 참여가 핵심 요소로 설정되어야 한다. 참여는 수혜자와의 형식적 혹은 의례적인 접촉이 아니라 활동적이며, 자유로우며, 의미 있는 참여를 상징하고 대북지원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대북개발지원과 인권을 통합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권이 개발과정에 통합되는 방식 중 최근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유엔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개발접근방식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따르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국제인권기준에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개발문제 중심에 있는 불평등을 분석하고, 차별과 권력의 분배를 시정하는 개발전략이다. 기존의 개발방식과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의 개념이다. 기존의 개발은 단순한 수혜자로 보고 시혜와 자선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반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대상자를 단순한 수혜자나 참여자로 보지 않고 권리보유자(rights-holders)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17) Vitit Muntarbhor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7/20, 2008.

할 상응하는 의무담지자(duty-bears)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대북 개발지원 과정에서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권리보유자는 북한주민이고 가장 핵심적인 의무담지자는 북한당국이다. 그러므로 대북개발 추진 과정에서 북한주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 보유자로 규정하고, 사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사람에 의한 개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의무보유자인 북한당국이 권리보유자인 북한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한다.¹⁸⁾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지원 초기 투입의 결과 나타나는 특정 생산물인 산출과 서비스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점차 성과에 기반한 평가, 참여적 개발과 평가, 학습된 교훈의 도출과 환류, 국민에 대한 책무성의 관점에서 평가 제도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성과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평가로 평가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성과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평가 원칙과 기준을 원용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엄정한 평가 제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야 한다. 평가결과는 2가지 차원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결과 도출된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지원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대북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평가를 통한 지원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구상과 기획역량의 제고, 사업결과 평가의 유기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5. 맺는 말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은 쌍무적 책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북한 내 인도적 위기 해소는 한국 사회와 북한당국의 쌍무적 책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의 책무만을 강조하여 왔다. 한국 사회의 책무도 2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지원을 제공하는 책무와 동시에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도주의 목표 실현을 위한 책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통해 구현될 수 있

18) 이금순·김수암, “북한인권: 개방과 삶의 질 향상,”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서울: 통일연구원, 2008).

다.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인도주의 정신의 실현과 함께 북한주민의 대남 우호적 인식,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복합적 대북지원 목표를 추구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접촉의 유지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인도주의 목표는 소홀한 측면이 많았다. 앞으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인도주의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분단, 북한체제 등 특수성보다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집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규범이라는 원칙에는 충실하되, 적용과정에서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책무인 동시에 북한당국의 책무이기도 하다. 보다 본질적으로 북한당국의 책무이다. 북한당국의 책무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인도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협조와 태도 변화에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협조에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등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에 대한 전달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앞으로 개발지원을 위한 지역개방과 북한주민의 참여라는 인적 개방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책무를 강조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 관점의 책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지원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단순히 인도주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주의 구현 시각으로만 접근할 경우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전체적 측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빈곤의 복합성, 인간개발, 사회개발, 인권과 개발의 통합, 인간안보 개념을 원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정교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지원으로 전환하고 북한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개발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도변화 등 북한 내 수용여건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 향 분 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밭농사
4. 감자농사
5. 축 산
6. 농업기반
7. 산 림
8. 기타 작물
9. 기타 보도 동향

동향분석 요약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주체농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 비배관리를 기술규정대로 진행하여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해내도록 하고 있음.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벼가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각 작업소 및 공장에서는 농기계 및 농기구 수리 정비에 힘을 쏟아 제때에 농기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벼가을과 동시에 벼단뭉기, 난알털기를 진행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노동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밀, 보리, 강냉이 가을이 한창임. 이에따라 각 협동농장에서는 모든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제때에 곡식을 실어들이고 난알털기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콩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콩밭비배관리를 강조하며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거름과 소석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최대 수확을 이루기 위해 감자비배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흙보산비료 생산정형을 정확히 알아보는 동시에 지난해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앞선비료주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감자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협동농장에서는 기계 수리 정비를 마치고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감자 수확과 동시에 종자선별, 저장, 분배처리를 시행하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늘려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토끼 기르기에 힘을 쏟고 있음. 또한 집짐승 먹이 문제 해결을 위해 풀판조성을 실시하고 있음. 자강도, 강원도 등지에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예성강 청년 2호 발전소 건설장의 물길굴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으며, 미루벌물길 시험통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국토관리사업을 통해 경제림 및 땔나무림을 조성하였음. 인민의 먹는 문제 해결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간석지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대계도 간석지의 경우 이미 논으로 정리되어 해마다 많은 쌀을 생산해내고 있음.

토지보호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산림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각 도의 임업관리국에서는 통나무 마감나르기에서 연일 혁신을 이뤄내고 있음. 각 사업소에서는 통나무생산에 필요한 자재 보장에 힘을 쏟는 한편 나무베기, 나무모으기 등 모든 생산공정이 맞물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음.

각 협동농장에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풀베기가 진행되어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시키고 있음. 각 농장에 농기계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각 기계공장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농기구 및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음. 집짐승배설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생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고 있음. 평양시에 1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1. 농업정책

-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주체농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 비배관리를 기술규정대로 진행하여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해내도록 하고 있음.

□ 농업정책

- 화선식경제선동으로 농업전선을 추동(로동신문 7.26)
 - 김정일은 “인민의 먹는 문제를 풀자면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함.
 -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 조직의 지도아래 영농전투에서 경제선동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벼품종에 맞게 개조된 모내는기계를 적극 도입하였기 때문에 올해 모내기 성과가 주목됨.
 - 농장에서는 지난해 개최한 제35차 전국농기계창안자 회의 및 농기계전시회에서 1등을 한 기계를 올해 새로운 벼품종의 모내기에도 도입하였음.
- 농작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로동신문 8.3)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함.
 - 서해별방농촌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농작물비배관리에 앞장서고 있음. 특히 룡천별과 운전별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농촌에서 앞장서고 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은 포전상태에 맞게 김매기계획을 날짜별로 구체적

으로 계획하고 수행하여 논밭 5회 김매기를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끝냄.

○ 앞질러가며 하나하나 실속 있게(민주조선 8.27)

- 김정일은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영농공정별 지도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봉산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준비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서 생육후반기에 들어선 농작물에 대한 비배관리를 기술규정대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여 가을걷이에 지장 없도록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각 기업소에서는 트랙터수리와 부속품생산, 농기계제작 및 농기구생산을 말끔히 끝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로동신문 9.25)

- 군안의 각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 가을걷이를 앞두고 운반능력을 높이는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각 협동농장에서는 목재와 가마니를 이용하여 강냉이이삭을 1.3배 이상 더 실을 수 있게 함. 수 십대의 연결차를 수리정비하고 트랙터적재함에 연결하여 이용하고 있음.
- 군농기계작업소와 농장기계화작업반에서는 대용연료를 이용하는 탈곡기와 함께 족담기 등을 자체 생산하고 수리 정비하여 적극 이용하고 있음.
-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난알운반과 탈곡용 운수수단 및 농기계에 필요한 부속품 수십 종에서 수 만점을 각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로동신문 8.4)

- 김정일은 “농업근로자를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조직 동원을 하는 것은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라고 말함.
-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올해 농사에서 장훈을 부르기 위한 근본열쇠의 하나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발동에서 찾고 협동벌에 내려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역할을 잘해 나가고 있는 농근맹일군을 적극 내세워주면서 그들을 모범삼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음.

○ 잡도리도 좋고 실천도 좋다(민주조선 10.15)

- 김정일은 “모든 일군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며 용감하게 전진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홍남비료연립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과 2.8비날론련합기업소 2단계개건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공사를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위원회는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백운산 종합식료공장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함흥시의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살림집건설, 함흥의학대학2호청사와 전자도서관건설, 함흥화학공업대학 전자도서관 건설 등 대상건설을 맡은 일군들도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공사속도를 높여나가도록 건설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음.

○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민주조선 10.16)

- 경공업성의 일군들이 농업근로자들과 농업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주어진 자각을 안고 농촌지원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있음.
- 김정일은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농업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마다 농촌을 힘껏 지원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성에서는 가을철 농촌지원사업이 제기되자 벼가을걷이전투에 노동력을 한사람이라도 더 내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있음.
- 성의 책임일군들이 해당 농장에 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 때에 해결해주기 위한 조직사업도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음. 관리국별로 영농준비에 필요한 물자를 분담하고 그것을 어김없이 보장하도록 하였음.

□ 농업관리

○ 중요강하천에서의 큰물피해방지사업 강화(로동신문 8.1)

- 각지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이 강하천관리에 힘을 쏟으며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김정일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은 국토를 보호하고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라고 말함.
-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대동강과 청천강을 비롯한 중요강하천에서 큰물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를 조사확정한데 기초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10여개의 중요 강하천 지역에서 수만 m^3 의 토랑처리, 수만 m^3 의 장식공사, 1만 수천 m^3 의 돌넣기 사업을 실시하여 수십리 구간의 제방을 보수하였음.
- 호안림조성과 타래붓꽃심기를 통하여 큰물로부터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각지 강하천관리소에서는 많은 양의 평양포플러나무모를 생산하여 최근 몇 달 동안 300여 정보의 호안림을 조성하고 70여 정보의 면적에 타래붓꽃을 심었음.

○ 영농공정별 지도를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민주조선 10.14)

- 온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100일 전투의 불 길속에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패기 있게 해나가고 있음.
- 김정일은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영농공정별 지도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봄내, 여름내 애써 일 해온 것처럼 올해농사의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벌이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업소가 당면한 영농공정수행에서 자기 몫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패기 있게 해나가고 있음.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력과 운반수단이 동원되는데 맞게 농기계부속품과 농기구생산을 종전보다 훨씬 늘이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군안의 협동농장에서 벼단뭉기와 동가리치기에서 난알의 부패변질을 막고 허실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음.

○ 혁신의 기상 넘치는 사회주의협동별(10.15)

- 황해북도안의 각 농촌에서 100일 전투기간에 계획대로 벼가을걷이 마감단계를 진행하고 있음. 농기계와 탈곡장들을 말끔히 수리정비한데 기초하여 적기에 벼가을

에 들어선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농사를 하루빨리 질적으로 끝낼 목표아래 벼가을을 다그치고 있음.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노동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며 모든 운반수단을 다 동원하여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난알털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도안의 시, 군에 내려간 농업부문 일군들은 한해농사를 결속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벼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게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여 가을걷이를 본격적으로 내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음.
- 사리원시안의 미곡, 정방, 만금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은 한포기의 벼를 베고 단을 묶어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하게 하면서도 매일 높은 일정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과학영농

○ 가치 있는 과학연구성과를 이룩(민주조선 8.15)

- 최근 농업과학원 자강도분원의 과학자들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알곡과 남새, 뽕나무를 비롯한 수십 종의 새 품종을 육종하여 도의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김정일은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의 역할을 높여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함.
- 분원과학연구집단은 좋은 종자를 육종하여 생산성을 검증하며 두벌농사를 위해 앞그루와 뒤그루농작물 품종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남새연구집단은 배추, 오이, 고추 등 새 품종을 육종하고 있으며, 강냉이연구집단에서는 수확고가 높은 새로운 강냉이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벌려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소출이 높은 강냉이종자들을 육종해내었음.
- 새품종의 뽕나무와 누에종자를 얻어내기 위한 잠업연구집단에서는 추위와 병견딜성이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뽕나무품종과 누에품종을 얻어내는데 성공함.
- 생물비료와 생물농약연구집단은 새로운 미생물활성비료와 생물농약을 연구해냄으

로써 화학비료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알곡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과학적 담보를 마련함.

2. 벼농사

-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벼가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각 작업소 및 공장에서는 농기계 및 농기구 수리 정비에 힘을 쏟아 제때에 농기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벼가을과 동시에 벼단뭍기, 낟알털기를 진행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노동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가을걷이

○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로동신문 8.21)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즉시 제때에 걷어 들이고 탈곡도 빨리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한해농사에서 가을걷이준비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사업과 지휘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하여 농기계수리와 부속품 생산을 계획대로 하여 끝내는데 힘을 쏟고 있음.
- 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탈곡장 보수와 농기계수리정비, 중소농기구준비를 빨리 끝내고 있음.

○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하자(민주조선 8.22)

- 김정일은 “가을걷이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함.
-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이 가을걷이준비에 사상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수리정비에 큰 힘을 쏟으며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최대한 동원하여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와 농기구의 수리정비 및 생산을 계획대

로 해야 함.

-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며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빈틈없이 밀고 나가야 함.

○ 가을걷이준비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8.28)

- 황해남도안의 농촌에서는 각종 소농기구와 탈곡기, 운반수단을 수리, 정비하는 등의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실시하고 있음.
- 김정일은 “가을걷이를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은률군은 벼종합탈곡기와 강냉이탈곡기 등 각종 탈곡기수리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수리공을 각 협동농장에 보내어 협동농장의 탈곡기 수리정비를 돕고 있음.
- 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탈곡장과 강냉이 저장고 보수 계획을 실정에 맞게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민주조선 9.12)

- 150일 전투에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의 힘찬 노력을 이어나가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야 함.
- 김정일은 “다 지어놓은 낱알을 한 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거둬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함.
-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품종별에 따라 곡식이 여문상태에 맞게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야 함.
- 연관부문에서는 가을걷이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가을걷이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여 주체적인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함.

○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로동신문 9.13)

- 평안북도의 각 농촌에서 가을걷이를 적기에 해낼 목표를 세우고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과 벼탈곡기, 강냉이 탈곡기를 전반적으로 수리정비하고 탈곡장과 강냉이 저장고도 보수하는 등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

- 김정일은 “가을걷이는 때를 놓치면 안된다. 다 지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많은 낱알을 허실할 수 있다.”라고 말함.
- 가을걷이준비를 실속있게 하기 위해 각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애국의 열정안고 가을걷이에 모든 힘을 집중(로동신문 9.27)
 - 평양시주변 각 농촌의 근로자와 일군들은 봄과 여름 내내 애써 지은 낱알을 제때에 걷어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즉시 제때에 걷어 들이며 탈곡도 빨리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벼가을준비와 강냉이가을에서는 사동구역과 순안구역, 강남군안의 협동농장이 앞서나가고 있음.
 - 평안북도의 각 농촌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이 강냉이 따기와 운반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낱알보관관리에 관심을 돌리고 있음.
- 벼가을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9.29)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즉시 제때에 걷어 들이며 탈곡도 빨리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당위원회는 150일 전투의 경험을 바탕으로 100일전투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주시 연양협동농장에서는 가을걷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하여 기술지도 또한 실시하고 있음.
- 벼가을걷이가 시작되었다(민주조선 9.24)
 - 김정일은 “다 지어놓은 낱알을 한 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안의 각 농촌에서 벼가을걷이가 시작되었음. 해주시 연양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가 먼저 시작되었으며 연백벌과 재령벌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에서도 일제히 벼가을에 진입함.
 - 가을걷이전투조직과 지휘를 맡은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서는 책임성과 역할을 부쩍 높여나가고 있음.

- 추정, 금성, 수원협동농장을 비롯한 배천군안의 각 협동농장에서는 적기를 잘 타산하여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발휘해나가고 있음.

○ 모든 역량을 벼가을에 집중(로동신문 10.7)

- 평안북도안의 협동농장에서 당창건기념일을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일념을 안고 벼가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첫 시작부터 실적을 부쩍 높이고 있음.
- 김정일은 “가을걷이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 지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많은 난알을 허실할 수 있다.”라고 말함.
-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서 농촌의 모든 역량을 벼가을에 집중하고 벼가을과 난알털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룡북, 신정협동농장을 비롯한 염주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벼가을을 다그치면서 트랙터 등 능률적인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벼단을 탈곡장까지 옮겨놓거나 논두렁에 내다 쌓고 있음.

○ 벼가을을 본때있게 다그친다(로동신문 10.8)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즉시 제때에 걷어 들이며 탈곡도 빨리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고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온 황해남도안의 농촌들이 들끓고 있음.
- 연안군 오현, 소정, 배천군 금성협동농장을 비롯한 별안의 농장에서는 논물떼기를 제때에 하고 벼이삭이 여문 상태에 따라 포전별, 날짜별로 세운 벼가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벼단뭉기를 동시에 하고 있음.
- 평안남도의 개천-태성호물길을 마련한 것에 보답할 마음에 도안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벼가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가을걷이에 모든 힘을 집중(민주조선 10.8)

- 김정일은 “가을걷이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 지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

어들이지 않으면 많은 난알을 허실할 수 있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벼가을걷이에 한창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가을걷이와 난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 계획아래 대담한 작전을 펼치며 실천하고 있음.
- 천군안의 농촌들, 특히 신암, 장산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백두산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벼가을전투에 힘을 쏟고 있음.
- 산두, 룡송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벼가을걷이목표를 높이 세우고 주인의 자세로 벼가을걷이를 다그치고 있음.

○ 가을걷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10.14)

- 김정일은 “가을걷이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 지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많은 난알을 허실할 수 있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인민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농촌을 노동력과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도록 진행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도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과 함께 농촌경리위원회와 긴밀한 연계아래 농촌지원 노동력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서 농촌에 필요한 트랙터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주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시, 군에 있는 기관, 기업소에서는 가을걷이에 필요한 운반수단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도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수십 종에 이르는 수천 점의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각지 협동별에 보내준데 이어 농장에 달려 나가 농업근로자와 한데 어울려 일을 하며 한 알의 난알도 허실되지 않도록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

○ 벼가을걷이를 더욱 힘있게(민주조선 10.15)

- 배천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당의 부름따라 100일전투에 힘차게 펼쳐나선 군안의 일군과 농업근로자, 농촌지원자들이 요즘 가을걷이에서 날마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즉시 제때에 걷어 들이며 탈곡도 빨리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군협동농장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서 난알이 여무는 시기와 일기조건에 맞게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품종별, 필지별로 익는 즉시 제때에 거두어들이도록 지도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일꾼들부터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끄는 한편 벼단묶기와 동가리치기를 기술규정대로 하고 있음. 또한 트랙터연결차와 달구지에 멍석을 깔고 벼단을 싣고 옮기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음.

○ 한 알의 난알도 허실없이(민주조선 10.15)

- 김정일은 “다 지어놓은 난알을 한 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함.
- 농장에서는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방도의 하나를 가을걷이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당면한 벼가을을 기본적으로 끝낸데 맞게 벼단꺼들이기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작업반들에서 포전조건과 운반거리에 따라 소달구지와 각종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거둬들인 곡식을 제때에 실어 나르도록 하고 있으며 운반도중 한 알의 난알도 허실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3. 밭농사

- **밀, 보리, 강냉이 가을이 한창임. 이에따라 각 협동농장에서는 모든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제때에 곡식을 실어들이고 낱알털기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콩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콩밭비배관리를 강조하며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거름과 소석회를 내도록 하고 있음.**

□ 이모작동향

- 두벌농사도 본때있게(로동신문 9.11)

- 당의 방침에 따라 150일전투를 힘있게 실시하고 두벌농사방침을 관철하여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음.
- 종자문제가 해결되고 두벌농사면적이 많이 늘어났으며 여러 가지 두벌농사방법이 현실에 도입되어 알곡증수에 있어 보다 밝은 전망이 열리었음.
- 김정일은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두벌농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두벌농사에서 이익을 본 재령군 삼지강, 태천군 은흥, 함주군 동봉,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일군과 농장원들은 두벌농사면적을 늘린데 맞게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음.

□ 콩농사

- 콩밭비배관리를 알심있게(민주조선 7.21)

- 자성군 류삼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이 콩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콩밭 비배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농장의 모든 작업반은 콩의 생육상태를 따져가며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

하도록 기술지도를 진행하고 있음.

- 병해충예찰사업을 진행하여 콩이 병해충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도 예견성있게 세우도록 하고 있음.

○ 콩밭비배관리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8.2)

- 갑산군 삼일협동농장에서 농장자체에서 생산이용하고 있는 효능이 높은 식물성농약이 콩농사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음.
- 김정일은 “농약문제를 풀어야 콩을 재배하는데서 병충해를 막고 콩농사를 안전하게 잘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함.
- 이들이 만든 식물성농약은 원료가 풍부하고 품이 적게 들어 좋음. 식물성농약의 원료로는 흔한 식물들이 이용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 또한 있음.
- 농장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식물성농약의 우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그들이 생산이용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음.

○ 콩농사에서 장훈을 부를 목표 밑에(민주조선 8.12)

- 당의 콩농사방침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킬 데 대한 공동사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강남군안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콩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 김정일은 “콩만 있으면 먹는 기름문제도 풀 수 있고 인민들에게 두부도 만들어 공급할 수 있으며 집집승먹이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말함.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콩농사의 대담한 목표 아래 각 협동농장에서 콩을 심을 적지를 바로 정하도록 한 다음 수확고가 높은 다수확품종을 심게 하였음. 콩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당 수십톤의 거름과 소석회를 내도록 한 토대 위에서 콩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음.

○ 콩밭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8.28)

- 김정일은 “콩농사는 우리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다할 수 있다.”, “콩농사를 잘하면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문제가 풀린다.”라고 말함.
- 창성군에서는 올해 군당위원회의 지도아래 콩농사를 실속있게 지도하도록 조직사

업을 면밀히 하였음.

- 금야협동농장, 옥포축산전문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모든 포전들을 알뜰히 가꾸어서 무더기비가 와도 물이 제때 빠지도록 하고 있으며, 콩 한포기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음.
- 화평군에서는 부남협동농장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모든 협동농장에서 콩밭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 콩밭비배관리를 더욱 알심있게(민주조선 9.13)

- 황해남도의 일군들은 올해 세운 콩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콩의 생육후반기 영농조직과 지휘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음.
- 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주작으로 심은 콩의 생육후반기 영양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콩이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고랑관수, 짚지발관수도 널리 받아들여 농작물이 가물을 타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가을걷이

○ 밀보리가을로 뿔어번지는 협동벌(민주조선 8.28)

- 량강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밀보리가을이 한창임. 대흥단군과 삼지연군, 백암군을 비롯한 도안의 농장에서는 밀보리가을걷이에 힘을 쏟고 있음.
- 김정일은 “가을걷이를 빨리 계획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함.
- 도안의 시, 군농업부문 일군들은 농장, 작업반 포전별로 곡식이 익는 즉시 가을걷이를 제때에 하기 위한 일정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가을걷이에 집중하고 있음.
- 대흥단군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감자캐기에 앞서 밀보리가을을 끝내기 위해 힘을 집중하고 있음. 그 외 덕지대 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와 부림소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밀보리를 탈곡장에 실어 나르고 있음.

○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9.13)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노동력을 가을걷이에 집중하며 모든 운반수단을 다 동원하여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난알털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시, 군에 내려 보내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가을걷이에 집중하게 하는 한편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적기를 바로 정하고 당면한 강냉이가을걷이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강냉이가을을 적기에 끝내자(민주조선 9.26)

- 강원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농업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강냉이가을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가을걷이가 시작을 잘한 각 시, 군에서는 공정별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고 있음.
- 일군들은 보여주기 사업과 포전별 수확고판정, 노동력의 분배와 운반수단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음.

○ 강냉이가을 마감단계에서(민주조선 9.26)

- 김정일은 “벼와 강냉이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익는 즉시 제때에 걷어들이며 탈곡도 빨리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중화군 삼성협동농장은 올해 높이 세운 목표를 농작물 가을걷이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는데서 찾아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농장의 작업반 초급일군들은 노동력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소농기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으며 이른 아침부터 강냉이를 가을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 거리가 먼 포전은 트랙터를 이용하고 가까운 포전은 축력을 비롯한 여러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강냉이를 제때에 탈곡장으로 실어들이고 있음.

○ 가을걷이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10.2)

- 봉천군안의 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일제히 강냉이가을걷

이에 들어가 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음.

- 김정일은 “강냉이가을을 빨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신답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 관련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한 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에서 강냉이가을걷이 일정계획에 맞게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배치하고 그날 가을한 강냉이는 그날로 탈곡장에 실어들이고 있음.

4. 감자농사

- 각 협동농장에서는 최대 수확을 이루기 위해 감자비배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흙보산비료 생산정형을 정확히 알아보는 동시에 지난해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앞선 비료주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감자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협동농장에서는 기계 수리 정비를 마치고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감자 수확과 동시에 종자선별, 저장, 분배처리를 시행하고 있음.

□ 감자농사 준비

- 포기마다 최대 소출을 내도록(민주조선 8.6)
 - 부전군안의 각 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와 일꾼들이 감자비배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이룩해 내기 위해 군안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감자비배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도 감자포기가 습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소출을 내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감자의 전반적인 생육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흙보산비료를 포기마다 충분히 주는데서 찾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아랫단위 협동농장에서 이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각 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 생산정형을 정확히 알아보고 짧은 기간에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실속있게 세우고 있음. 이와 함께 지난해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앞선비료주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음.
-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민주조선 8.6)
 - 무산군 오봉협동농장에서 감자역병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농장에서는

역병방지를 위한 사업을 감자밭가꾸기의 중요한 영농공정의 하나로 내세우고 예견성있게 내밀고 있음.

- 역병에 대한 예찰예보사업을 실속있게 하는 한편 이미 효과가 입증된 대홍단식과 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역병을 미리 방지해나가도록 이끌고 있음.
- 이른 감자밭을 여러 번 후치질(배토관리)하여 이랑을 높이고 감자포기가 물에 잠기거나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감자농사

○ 백두삼천리에서 감자캐기 시작(로동신문 8.3)

- 김정일은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량강도가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도 대홍단군이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라고 말함.
-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트랙터와 감자종합수확기에 대한 수리정비를 미리부터 잘해놓고 모든 역량을 포전에 집중하여 감자캐기를 해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군들은 미리부터 군감자수송대와 군안의 감자가공기지들에 나가 화물자동차들과 가공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음.
- 농사동, 창평, 홍암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감자캐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외 신덕, 삼봉, 서두, 신흥농장에서도 일정계획에 맞춰 감자캐기를 진행하고 있음.

○ 감자캐기로 들끓는 대홍단군에서(민주조선 10.1)

- 김정일은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량강도가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도 대홍단군이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라고 말함.
- 군에서는 감자캐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홍단감자가공공장 접수장능력을 확장하고 신흥, 백산, 홍암농장에 있는 감자전분공장을 비롯한 가공기지를 확장하고 그것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미리부터 빈틈없이 세워놓음.
- 이와 함께 감자캐는 과정에 종자선별과 저장, 분배처리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음.
- 신흥, 홍암, 창평, 농사동농장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감자캐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날마다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1.2배 이상씩 해내고 있음.

○ 감자가공능력 1.4배로 장성(로동신문 10.1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대흥단감자가공공장에서는 하루 감자가공능력을 종전에 비해 1.4배로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 김정일은 “감자가공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것은 감자가공을 공업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공장에서는 최근 연간 야외감자접수장 2개를 건설하고 건식흙분리기와 승강기식 컨베어를 설치하였으며 감자가공공정도 2계열로 늘어 하루 감자가공능력을 훨씬 높였음.
- 공장의 3대혁명소조원과 기술자들은 많은 전기를 이용하던 정화장대신 동력을 전혀 쓰지 않는 자연식 5단물되돌이정화장을 새로 건설하여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부쩍 끌어올리는 혁신을 창조하였음.
- 음료직장에서는 발효공정의 전산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분탕직장에서는 포장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제품포장의 질을 높이고 있음.
- 전분생산을 담당한 기업공들은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 교대당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축 산

- 각 협동농장에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늘려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토끼 기르기에 힘을 쏟고 있음. 또한 집짐승 먹이 문제 해결을 위해 풀판조성을 실시하고 있음. 자강도, 강원도 등지에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축산동향

- 집짐승 먹이 문제해결의 확고한 전망(민주조선 7.15)
 - 신천군종축장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10정보의 풀판을 새로 조성하고 이미 있던 60여 정보의 풀판을 정리하는 성과를 이룩함.
 - 김정일은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자면 풀판조성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함.
 - 종축장의 일군들은 주변의 산을 일일이 밟아보면서 새로 조성할 풀판적지를 확정하는 한편 풀판조성을 짧은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또 하나의 축산기지가 세워졌다(민주조선 8.12)
 - 자강도 장자강 기슭의 구봉령지구와 의진지구에 강계시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또 하나의 종합축산기지가 세워짐.
 -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함.
 -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림업관리국, 강계연필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수십리 구간에 전개된 한 개의 본장과 24개의 분장을 포함한 규모가 큰 종합축산기지 건설에 힘을 쏟았음.
 - 장자강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분장에는 오리도 기를 수 있게 오리사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분장의 먹이가공기지에는 분쇄기, 제분기, 성형기도 제작하여 설치하였음.

- 구룡령입구에 세워진 본장건설을 맡은 시급기관 일군과 근로자들은 사무실과 젓가공공장, 클로렐라배양장, 먹이가공장과 먹이창고, 집짐승우리와 수집 동의 살림집을 특색있게 건설함.

○ 축산기지 건설 힘있게 추진(로동신문 9.16)

- 강원도에서 지난해 착공을 시작한 축산기지를 완공하기 위해 연일 새로운 위훈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 김정일은 “인민들이 고기를 넉넉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내밀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라고 말함.
- 원산시시대와 평강군, 고산군중대가 앞장 서 인민에게 고기와 알을 넉넉히 공급하도록 축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3, 4분기 인민경제계획 넘쳐 수행(로동신문 10.4)

- 평양가금지도국아래 닭, 오리공장들과 구성닭공장, 광포오리공장들에서 3,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김정일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면 단백질식품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함.
- 만경대 닭공장에서는 메탄가스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보다 활성화시키면서 대용먹이, 단백질식생산기지를 꾸리고 먹이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간 계획 빛나게 넘쳐 수행(로동신문 10.15)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강계돼지공장, 사리원돼지공장, 평북돼지공장, 홍주돼지공장에서는 연간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이 성과는 이곳의 일군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결사관철의 정신과 불굴의 정신으로 이룩한 결실임.
- 김정일은 “우리가 이미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단백질식품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함.
- 강계돼지공장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기술학습을 조직하고 있음. 특히 기술자들은 종축생산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먹이처방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종축생산을 확고한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 세웠음.

- 사리원돼지공장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 힘으로 풀어나가고, 도 일군들의 방조 아래 물 원천을 찾아내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사를 진행하여 부족한 물문제를 해결하여 고기생산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고 있음.
- 홍주닭공장에서는 과학적인 육종체계를 세우고 사양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 일군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연일 새로운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높이 세운 올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끈기 있게(민주조선 10.16)

- 룡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끈기 있게 내밀어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올해 고기와 젖을 비롯한 축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농장원들의 식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김정일은 “산을 이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이다.”라고 말함.
- 농장에서는 집짐승사양관리를 맡은 농장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강습을 자주 조직하고, 비육분조와 농장원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종축작업반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집짐승사양관리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염소와 양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이동방목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 최고 생산실적 기록(로동신문 10.18)

- 황해남도 계남목장에서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기르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자료에 의하면, 목장에서 지난 7월 연간 새끼염소생산계획을 끝냈으며 9월에 들어와 연간 젖생산계획을 133%로 초과수행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음.
- 새끼염소는 계획보다 600여 마리, 염소젖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백수십 톤이나 더 생산함으로써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받은 이후 지난 6년간의 최고 생산실적을 기록하였음.
- 김정일은 “인민들이 고기를 넉넉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실시하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라고 말함.
- 분장에서는 우량종 염소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튼튼한 종축토대에 의거하여 앞선 새끼염소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그리

하여 새품종 종축염소작업반이 지난 7월 연간 새끼염소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낸 데 이어 염소 제1, 2작업반에서도 연간 계획을 앞서 수행하는 실적을 세움.

□ 토끼

○ 토끼기르기를 끈기 있게(민주조선 7.19)

- 개천시 대각협동농장 종축작업반에서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자는 당의 방침을 따라 토끼기르기를 끈기있게 내밀고 있음.
- 작업반 내에서는 먹이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토끼 마리수를 늘리고 수의 방역사업에도 관심을 돌려 해마다 많은 토끼를 생산하여 농장원세대에 공급하고 있음.
- 이들은 농장에서 걷어 들인 고구마줄기와 콩깍지, 남새부산물 등을 잘 말려 어미토끼에게 먹이면서 새끼토끼 생산을 해마다 1,000여 마리 이상씩 중단 없이 해왔음.

□ 오리

○ 생산정상화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10.15)

- 광포오리공장의 일군과 종업원들이 오리고기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이곳 일군과 종업원들은 함흥시민들에게 보내줄 오리고기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고기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함.
- 당, 행정, 기술일군, 근로단체 일군들은 모두가 한 개 단위씩 맡고나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실시하고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음.
- 봉대종금 직장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김정일인 방문한 일터에서 일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종자오리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150일전투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킴.
- 알깨우기 직장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150일전투

계획을 한 달반 이상이나 앞당겨 수행하였음. 1, 2작업반장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빗수감부에 의한 선풍기날개회전수축정 및 경보신호장치와 자동급수조절기, 공기식분무기 등을 자체로 제작하여 알깨우기실수율을 부쩍 올릴 수 있게 함.

□ 꿩

○ 1만여 마리의 꿩을 놓아주었다(로동신문 10.16)

- 김정일은 “일군들은 어떤 일이든 하나를 하여도 그것이 실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착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해마다 많은 꿩을 길리 도안의 곳곳에 놓아주고 있는 황해북도에서 지난 6일과 8일 산에 또다시 1만여 마리의 꿩을 놓아주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도에서는 꿩, 노루를 비롯한 동물들을 적극 보호 증식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음.
-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꿩, 노루를 기르는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마리수 늘이기에 힘을 쏟고 있음. 꿩을 주변 산에 놓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꿩들이 숲을 이룬 산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건보장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도안의 당원과 근로자들은 꿩을 기르는데 필요한 영양가 높은 먹이문제를 해결하고 수의방역체계를 바로 세워 꿩 사육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6. 농업기반

- **예성강 청년 2호 발전소 건설장의 물길굴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으며, 미루벌물길 시험통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국토관리사업을 통해 경제림 및 땔나무림을 조성하였음. 인민의 먹는 문제 해결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간석지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대게도 간석지의 경우 이미 논으로 정리되어 해마다 많은 쌀을 생산해내고 있음.**

□ 물길공사

- 물길굴공사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로동신문 8.3)
 - 레성강 청년2호발전소 건설장에서 물길굴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황해북도청년돌격대원과 건설자들이 물길굴공사장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음.
 - 은파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은 암질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수백m에 달하는 2호물길굴공사를 끝냈음.
 - 평산대대 청년돌격대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면서 굴뚝기를 하고 콘크리트치기를 계획대로 하여 3호물길굴공사를 완공함.
 - 도탐사관리국대대 돌격대원들도 4호물길굴공사에서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기본물길굴뚝기에서 높은 실적 기록(로동신문 8.4)
 - 가장 힘든 건설대상의 하나인 물길굴공사를 맡은 조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이 7월말 현재 작업갱공사실적을 70%계선에 끌어올리는 업적을 달성하였음.
 - 특히 이들은 얼마 전 3개소의 작업갱굴진을 끝내고 여러 개소의 기본수로굴진에 진입함으로써 기본물길굴뚝기계획을 20%이상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불과 4개월 동안의 어렵고 방대한 작업갱공사를 앞세우고 기본수로굴진에서 대비

약을 일으킨 자랑스러운 성과는 물길굴건설에 나선 전체 건설자들에게 희천발전소 건설을 앞당겨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음.

○ 미루벌물길 시험통수 성과적으로 진행(민주조선 9.11, 로동신문 9.13)

- 미루벌물길은 미루지대에 관개용수와 공업용수, 먹는 물을 보장하게 되는 자연흐름식 물길임.
- 미루벌의 한가운데로 뻗어간 수백리 물길을 따라 자연흐름식으로 흘러내려 예정된 시간 안에 물길의 말단위치에 도달함. 시험통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물길의 안전성과 그 운영을 위한 획기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전망이 열림.
- 물길에는 여러 개의 저수지와 20여개의 크고 작은 물길굴들, 물 다리와 용수잠관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들이 자리 잡고 있음.
- 수십km에 달하는 수십 개의 물길굴공사가 3년 남짓한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었음.

○ 기본물길굴뚫기 80%계선 돌파(로동신문 10.4)

- 김정일은 “수력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공사의 돌파구를 하루빨리 해낼 목표로 굴진전투를 줄기차게 벌려 9월 중순까지 방대한 작업량공사를 100%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었음.
- 특히 부대전투원들은 기본물길공사를 위한 굴진을 9월말까지 그 실적을 80%계선에 올려 세우는 실적을 세움.

□ 국토관리사업

○ 국토관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 달성(민주조선 10.7)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라고 말함.
- 함경남도에서 150일전투기간에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조국강토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리기 위한 국토환경보호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음.
- 정평군, 덕성군, 부전군, 요덕군, 수동군, 함흥시 사포구역안의 산림부문의 일군들은 리원군산림경영소 양묘장처럼 자기 단위의 양묘장건물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킨데 이어 나무모포전도 손색없이 가꾸어 놓음.

- 시, 군의 산림부문의 일군들은 150일전투기간에 5,300여 정보의 면적에 경제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리고 7,100여 정보에 달하는 땔나무림도 조성하였음. 150일전투기간에 도에서 나무심기계획은 110%로, 잣집림조성계획은 250%로 넘쳐 수행하였음.
- 단천시 갈파령 도로확장공사를 완성함. 토량처리량만 수십만^m에 달하고 10여 곳에 소구조물을 설치하고 수백^m에 다하는 옹벽쌓기를 해야 하는 이 공사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공사임.

○ 국토관리 성과 계속 확대(로동신문 10.13)

- 각지 일군과 근로자들이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의 짧은 기간 내에 강하천제방공사와 보수, 도로건설 및 정리, 거리와 마을꾸리기 등 여러 가지 항목의 국토관리전반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평양시에서 강하천제방공사와 정리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함격북도에서 도로건설과 차굴공사, 다리건설,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평안북도 량강도의 혜산시, 백암군 일군과 근로자들은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기술상태를 개선하여 도로망을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할 목표를 내세우고 적극 내밀고 있음.
- 중강군 일군과 근로자들이 많은 토량과 암반을 처리하면서 도로를 건설하고 수만 ^m의 옹벽공사를 해낼 것을 비롯하여 자강도안의 각 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에 적극 떨쳐나(민주조선 10.18)

- 1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조국강산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국토관리 단계별 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진데 맞게 노동력 분배와 조건보장사업을 계획하여 국토관리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보여주기 사업에서는 강하천제방공사 및 강안정리, 마을꾸리기, 수림화, 원림화 등

국토관리사업에서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음.

- 남신의주 도로포장공사에 도적인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도로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이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도로의 질보장을 위한 시공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 1,300여 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민주조선 10.18)

- 금야군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올해 들어 1,300여 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군에서는 군안의 산림부문 일군들과의 밀접한 연계아래 나무 심을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군의 실정에 맞게 땔나무림, 잣접림, 혼성림, 종이원료림, 수유나무림을 비롯하여 1,300여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움.
- 산림경영소의 일군과 산림감독원들은 사람들에게 나무 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지대적 특성과 토양조건에 맞게 나무모뜨기와 운반, 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나무모사름율을 높이도록 하였음.
- 짧은 시일 내에 1,300여정보의 면적에 계획한 나무들이 조성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산림부문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가을철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300정보의 산림을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간석지

○ 온 나라가 주인(로동신문 7.20)

- 김정일은 “간석지건설은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더 훌륭히 해결하고 조국강토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보람찬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많은 자재와 설비, 노력이 요구되는 방대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에서는 대계도 간석지건설장에 시멘트와 연유를 비롯한 공사용자재와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였음. 국가검열성에서는 공사용자재와 물자보장 등 제기되는 문제를 주인된 입장에서 풀어주었음.
- 세신성에서는 가차도와 대계도까지 빛섬유통신선을 늘려주어 관리국일군들이 간석지건설전투를 기동적으로 능숙하게 지휘할 수 있게 도와주었음. 상업성과 보건

성에서도 건설현장합숙에 침구류 등 여러 생활용품을 보내주어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줌.

- 이밖에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많은 성, 중앙기관에서 대계도 간석지건설을 성심성의껏 지원하였음.
- 현재 대계도 간석지의 2,600정보가 이미 논으로 정리되어 벼농사를 짓는 별로 전변되었으며 염주군과 철산군의 간석지농장에서는 옛 바다위에 해마다 많은 쌀을 생산하고 있음.

○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로동신문 8.9)

- 대계도간석지건설장에서 평안북도간석지건설관리국의 일군과 건설자들은 3호방조제공사와 내부망 공사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관리국에서는 3호방조제공사와 내부망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조건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대형자동차를 비롯한 운반수단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움.
- 수송을 담당한 다사기계화사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유압식굴착기와 자동차에 대한 점검보수작업을 신속있게 하여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공사에 필요한 막돌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음.

7. 산 림

- 토지보호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산림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각 도의 임업관리국에서는 통나무 마감나르기에서 연일 혁신을 이뤄내고 있음. 각 사업소에서는 통나무생산에 필요한 자재 보장에 힘을 쏟는 한편 나무베기, 나무모으기 등 모든 생산공정이 맞물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산림조성

- 은정 속에 흰잣나무가 퍼진다(로동신문 7.17)

- 린산군에서 처음 찾은 흰잣나무가 지난해부터 평산군, 서흥군, 봉산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함.
- 김정일은 “산림을 잘 조성하고 보호하여야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려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 수 있으며 토지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함.
-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의 일군들은 시, 군 산림부문 일군과 마주앉아 흰잣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기 위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며 답사를 통해 적지를 선정함.
- 도와 린산군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흰잣나무를 도안의 모든 산에 널리 퍼트리고자 비배관리에 힘쓰고 있음.

- 은정어린 감살구나무가 숲을 이룬다(로동신문 10.12)

- 황해북도에서 은정어린 감살구나무를 퍼트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남. 감살구나무는 도만이 아니라 금수산기념궁전, 만경대혁명사적지, 전승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평양시안의 많은 곳에 뿌리 내림.
- 군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지혜를 합쳐 감살구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그해 수천그루, 다음해 1만여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함.

- 농가마다 5그루 이상 그리고 리소재지와 군안의 곳곳에 많은 감살구나무를 심었음.

□ 통나무생산

○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더 많은 통나무를(로동신문 7.19)

- 자강도림업관리국에서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관리국으로 한 달 반사이에 1만여m³의 통나무를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함.
- 김정일은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 목재생산을 높이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라고 말함.
- 발전소건설용 통나무 생산을 맡은 룡림림산사업소, 동신, 희천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희천발전소건설에 필요한 통나무를 생산보장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음.

○ 통나무마감나르기에서 연일 혁신(민주조선 8.11)

- 김정일은 “통나무생산에서 나무를 많이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어놓은 나무를 제때에 나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함.
- 자강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통나무마감나르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동신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 아래 모든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올해 들어 매달 통나무마감나르기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통나무를 제때에 보내주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통나무마감나르기에서는 동신, 희천갱목생산사업소, 랑림림산사업소, 강계, 위원, 송원, 고인림산사업소들이 앞장서고 있음.
- 위원림산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 아래 다른 림산사업소들의 자동차운전사들은 앞선 운전조법을 받아들이고 자동차에 대한 기술 관리를 잘하면서 한탕더뛰기, 한통더싣기를 활발히 벌려 통나무 마감나르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통나무생산 성과 계속 확대(로동신문 9.27)

- 김정일은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 목재생산을 높이

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개월 남짓한 기간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통나무생산이 1.3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량강도림업관리국 아래 립산, 갯목생산사업소의 노동계급이 150일전투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100일전투목표를 크게 세우고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쓰고 있음.

○ 연간 통나무생산계획 넘쳐 수행(민주조선 10.7)

- 북창갯목생산사업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통나무생산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8월 31일 현재 연간 통나무생산계획을 145%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였음.
- 사업소는 통나무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면서 대용연료를 이용하는 사업을 비롯한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함.
- 계절적, 지형적 특성에 맞게 생산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면서 나무베기, 나무모으기를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움.
- 부족한 것이 많은 어려운 조건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감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통나무 생산을 2배 이상으로 늘렸음.

□ 나무모 생산

○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로동신문 10.16)

- 성간군 산림경영소에서 일군과 노동자들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음.
- 경영소에서는 신청조림작업소 나무모밭의 지력을 높이고 나무모밭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 해마다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150만 그루 이상 생산하여 군안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농장에 보내주었음.
- 김정일은 “나무심기는 양묘장에서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튼튼히 키워 옮겨 심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7년 전 장자강 기슭 모래층 땅을 나무모밭으로 꾸릴 계획을 세우고, 군당위원회의 지도아래 경영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15정보의 땅을 65개에 달하는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흙갈이를 진행하였음. 규모있게 차려진 15정보의 나무모밭에서는 이깔나무, 들베나무를 비롯한 20여종의 나무모가 자라났음.
- 최근 5년 만에 800여만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가 생산되었음. 올해 이들은 300여만 그루 이상의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해 김매기, 물주기 등 나무모밭비배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8. 기타 작물

- 과일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해 과일나무 비배관리가 과학기술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 하에 가을남새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을남새비배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또한 목화를 비롯한 공예작물비배관리에도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과수

○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7.20)

- 황해남도 과수연합회사 아래 과수농장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높은 과일 생산성과를 내며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김정일은 “우리가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자면 과일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해야 한다.”라고 말함.
- 당 조직의 지도아래 각 회사에서는 아랫단위의 모든 일군과 근로자들이 과일생산자의 남다른 긍지를 안고 과일생산공정을 집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있음. 특히 과일나무비배관리를 비롯하여 과학적인 목표를 세워 월별, 지표별로 아랫단위 과수농장에 내려 보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키낮은사과나무밭 조성사업에 힘을 기울여온 장연, 삼천, 안악과수농장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과일나무 영양관리와 땅다루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과일나무의 생태학적요구와 특성에 맞게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회사아래 과수농장들은 과일나무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예찰사업에도 주목하고 있음. 회사는 영농물자를 과일나무모생산에 집중시키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생산기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남새

○ 가을남새 씨뿌리기를 적기에(민주조선 8.8)

- 정주시 성남협동농장에서 가을남새생산을 늘리기 위해 가을남새씨뿌림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임새있게 추진하고 있음. 이미 가을남새씨뿌림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데 맞게 남새생산을 맡은 작업반에서 당면한 영농작업수행에 노동력을 총집중하도록 하고 있음.
- 김정일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가을남새농사도 잘 지어야 한다.”라고 말함.
- 물보장을 비롯한 선행공정을 철저히 앞세우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가을남새씨뿌리기에서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 송림시 당산협동농장에서도 가을남새생산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일손을 모으고 있음.
-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이는데서 찾는 이들은 20% 이상의 많은 면적에 앞선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음.

○ 비배관리를 알심있게(민주조선 9.12)

- 청진시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가을남새밭 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음.
- 일군들은 각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에게 가을남새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남새관리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고 있음.
- 농장원들은 김매기를 잘하는데 증산의 예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새밭김매기를 3차례 이상 작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새밭 비배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착실히(민주조선 9.24)

- 문덕군 읍협동농장에서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음. 올해에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할 목표로 비배관리를 해나가고 있음.
-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에 나가 100일전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대중에 깊이 인식시키고 남새비배관리를 알뜰히 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김매기와 후치질(배토관리), 거름주기, 병해충구제를 제때에 하여 포전마다 가을남

새가 잘 자라도록 하고 있음.

○ 가을남새 비배관리에 큰 힘을(민주조선 10.16)

- 안주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시안의 주민들에게 김장용가을남새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 주변 협동농장에서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잘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시 주변 협동농장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배추와 무를 비롯한 가을남새모 옮겨심기와 씨뿌리기를 제철에 끝냈음. 협동농장원들은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음.
- 1963년 8월 김정일은 해주시 석천협동농장을 방문하여 남새품종을 늘이고 선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남새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데 대한 가르침을 주었음.
- 작업반에서는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확을 할 수 있는 다수확품종을 선택하여 가을남새심기를 진행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관심을 돌리고 있음.

□ 공예작물

○ 공예작물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7.30)

- 김정일은 “농사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체계와 방법을 가지고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말함.
- 농업성과 각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공예전문협동농장에 내려가 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예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시키고 있음.
- 각지 공예전문협동농장 일군들은 당 조직의 지도아래 올해 공예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각오를 안고 공예작물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선천군 안상공예전문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그날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창도군 신성공예협동농장에서도 포전별생육상태를 따져가며 익는 즉시 공예작물을 거두어들이고 있음.
- 기름작물을 많이 심고 가꾸고 있는 덕성군 신흥공예전문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은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고 있음. 적지를 찾아 들깨를 비롯한 기름작물을 심은 작업반에서는 비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기름작물 가꾸기를 착실히 하고 있음.

○ 남포시 신령공예전문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7.31)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리려면 담당자인 농업부문 일군과 농장원들이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함.
- 남포시 신령공예전문협동농장에서는 목화를 비롯한 공예작물비배관리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올해 목화와 박하, 약초를 많이 심은 조건에 맞게 공예작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재배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가꾸기를 실속있게 하도록 이끌고 있음.
- 일군들은 목화밭 김매기와 후치질(배토관리), 순치기, 비료주기,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영농과정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농장원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기름작물비배관리를 착실히(민주조선 9.13)

- 중화군 마장협동농장에서는 올해 많은 면적에 들깨와 참깨를 심고 생육시기별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일군들은 포전에 나가 비배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각 작업반에서 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영양관리를 잘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장원은 올해 기름작물 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들깨와 참깨밭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 이치에 맞게 잘하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각 협동농장에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풀베기가 진행되어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시키고 있음. 각 농장에 농기계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각 기계공장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농기구 및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음. 집집송배설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생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고 있음. 평양시에 1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풀베기

- 풀베기를 힘있게 벌려 논밭의 지력을 더욱 높이자(로동신문 7.16)
 - 15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더 많은 풀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양덕군 농업근로자들의 쫓기모임이 14일 은하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음.
 - 강창욱 농근맹중앙위원회위원장, 관계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음. 모임에는 양덕군농근맹위원장 리병준의 보고에 이어 은하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옥련, 사기협동농장 초급농근맹위원장 리재원, 온정협동농장 작업반장 채종권, 은하협동농장 농장원 원정희가 토론하였음.
 - 김정일은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하여서는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라고 말함.
 - 농업근로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풀을 베며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베는 즉시 날라다 쌓고 잘 썩혀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할 것을 강조하였음.
-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민주조선 7.22)
 - 자강도 안의 각 협동농장에서는 풀베기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음. 올해 세운 풀거름 생산목표에 맞춰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수만 톤의 풀을 베어 들고 있음.

- 김정일은 “농촌에서 주되는 힘을 풀베기에 돌리도록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라고 말함.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풀거름 량을 타산하여 시, 군에 풀베기 과제를 정확히 주고 농촌의 모든 역량을 풀베기에 집중하도록 하였음.
- 모든 협동농장에서 풀베기에 앞서 작업반, 분조와 농가에 퇴적장을 꾸리며 풀절단기를 비롯한 풀거름 생산시설을 정비 보수하도록 함.

○ 성과를 계속 확대(민주조선 7.22)

- 신계군안의 협동농장에서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세운 풀베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고 있음.
- 농장의 일꾼들은 산을 끼고 있는 유리한 조건에 맞게 노동력과 수송수단을 집중시키고 그날 벤 풀은 그날로 퇴적장과 집짐승우리에 실어 들여 잘 썩게 하고 있음.

○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7.24)

- 김정일은 “농촌에서 주되는 힘을 풀베기에 돌리도록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열흘 동안 벽성, 신원, 봉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 각 농촌에서 베어낸 풀이 86만 톤에 달하고 있음.
- 농장일꾼들은 퇴적장에 풀을 실어 나르고, 풀거름을 기술적 요구대로 생산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음.

○ 매일 수천 톤의 풀을(로동신문 7.25)

- 강령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매일 베어낸 수천 톤의 풀이 퇴적장에 쌓고 있음.
- 김정일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땅을 갈구자면 밀보리집도 이용하고 풀베기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축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함.
- 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과 농장원들에게 풀거름을 생산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이 풀베기전투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고 있음.

○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7.30)

- 김정일은 “풀베기운동을 널리 벌려 거름을 많이 장만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강원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다음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의 지력을 높이는데서 찾고 풀베기전투에 온 힘을 다하고 있음.
- 철원, 법동, 세포, 이천, 판교군에서는 야산이 많고 풀판이 좋아 풀거름생산을 힘있게 수행하고 있음. 특히 철원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1000톤, 500톤, 100톤짜리 퇴적장을 만들어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원산시, 안변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풀 원천이 적은 불리한 조건에도 풀베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

○ 풀베기를 힘 있게(민주조선 8.2)

- 화평군 소북협동농장에서 당면한 농작물가꾸기에 힘을 넣으면서 풀베기를 힘있게 벌려 매일 많은 량의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농장에서는 다음해 포전에 낼 유기질 비료의 80%를 풀거름으로 보장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실시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작업반별, 분조별, 개인별, 풀거름생산목표를 정해주고 그 날 과제를 그날로 수행토록 하고 있음.
- 풀원천이 많은 산골짜기에서는 매일 계획보다 2배 이상의 풀을 베고 있음.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베어놓은 풀을 제때에 퇴적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음.

○ 각지 농촌에서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8.9)

- 농업근로자의 힘으로 전국적인 올해 풀베기계획이 50% 이상 수행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 실적보다 115% 늘어남.
- 황해북도가 제일 많은 풀을 베었음. 사리원시, 름산, 싄평, 곡산군 등 도내 농업근로자들은 유기질 함량이 많은 적기에 풀베기실적을 부쩍 올릴 목표아래 풀원천이 풍부한 곳에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벌써 계획의 80%를 수행함.
- 만경대, 형제산구역, 상원군을 비롯한 평양시주변 각 농촌에서도 풀베기에 힘을 넣어 매일 1만 톤 이상의 풀을 베고 있음. 자강도시, 황해남도 내 시, 군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훨씬 더 많은 풀을 베어들었으며 평안남도와 강원도에서는 매일 8만 톤, 6만 톤 이상의 풀거름이 장만되고 있음.

○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여(민주조선 8.9)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풀베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 안의 각 농촌에서 150일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요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신의주시, 룡천군, 운전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에서 매일 수만 톤의 풀을 베어 들이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여러 가지 농작물비배관리가 겹치는 시기에 맞게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풀베기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잘 해나가고 있음.

○ 풀베기전투를 본때 있게(로동신문 8.10)

- 강원도 도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다음 해에 쓸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백만 톤의 풀을 베어들일 목표를 세우고 모든 시, 군에서 풀베기 전투를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풀씨가 낫기 전에 더 많은 풀을 베어 기술적 요구대로 잘 썩히도록 하고 있음. 회양군, 판교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풀을 많이 베어 들이는 동시에 논밭의 최뚝, 수로뚝의 풀도 놓치지 않고 원천을 모두 찾아내어 많은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각 농장에서는 농장별, 작업반별 풀베기과제를 정확히 주고 농업근로자들이 매일 많은 풀을 베어들이도록 하고 있음. 특히 풀베기와 김매기가 겹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베어낸 풀을 그날로 운반하여 퇴적장에 쌓게 하고 있음.

○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민주조선 8.11)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풀베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양덕군안의 협동농장에서 풀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풀베기에 온 역량을 쏟고 있음.
- 위원회일군들은 각 협동농장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풀을 베어들이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퇴적장에 썩히도록 하고 있음.
- 불리한 날씨조건과 여러 가지 영농작업이 겹치는 조건 속에서도 각 농장에서는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작업반, 분조간 사회주의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높이 세운 풀베기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연탄군안의 협동농장에서 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 내려가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음. 읍, 오봉협동농장에서는 산을 끼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더 많은 풀을 베고 있으며 운반수단을 효과있게 이용하여 베어놓은 풀을 제때 실어들이고 있음.

○ 전국적인 풀베기실적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15%(민주조선 8.12)

-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올해 풀베기계획은 50%이상 수행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 실적보다 115%로 늘어났음.
- 황해북도가 가장 많은 풀을 베어 들었음. 사리원시, 름산, 싄평, 곡산군 등 도내 농업근로자들은 벌써 계획의 80%를 해냈으며, 만경대, 형제산구역, 상원군을 비롯한 평양시 주변 각 농촌에서도 매일 1만 톤 이상 베어들고 있음.
- 송화, 은를, 재령군 등 도내 시, 군에서는 매일 수천 톤씩의 풀을 베는 것과 함께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베어놓은 풀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퇴적장에 쌓아놓음으로써 도적인 풀베기실적을 200여 만 톤으로 올리었음.
- 희천시, 랑림, 송원군을 비롯한 자강도시, 군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7만 여 톤의 풀을 더 베었으며 평안남도, 강원도에서는 매일 8만 톤, 6만 톤 이상의 풀 거름을 만들고 있음.

○ 풀베기전투를 힘있게(로동신문 8.22)

- 김정일은 “7월과 8월은 풀베기를 해야 할 시기이다. 다음해농사를 잘 짓자면 풀거름을 많이 장만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의 각 농촌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한 가운데 풀베기실적은 요즘 하루에 근 10만 톤에 이르고 있음.
- 자강도안의 모든 시, 군에서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때보다 1.2배의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황해북도안의 각 농촌에서는 풀베기전투를 중요한 공정으로 여기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음.

○ 풀베기계획 넘쳐 수행(로동신문 8.27)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풀베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함.
- 사회주의 경쟁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촌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더 많은 풀을 베어 들여 올해 풀베기계획을 102.9%로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킴.
- 황해북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농근맹조직에서는 대중을 풀베기전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실시하고 있음.
- 풀베기에서는 서흥군, 황주군, 수안군이 앞서나가고 있으며 토산군과 곡산군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도 풀판마다 노동력을 집중하여 풀베기를 다그치고 있음.

□ 농기계

○ 농기계부속품을 더 많이(로동신문 7.16)

- 김정일은 “농업과학기술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농기계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부속품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관리국아래 트랙터부속품공장들에서 5월과 6월 농기계부속품생산을 지난해에 비해 1.4배로 늘려 각지 농촌에 보냈다고 함.

○ 능률 높은 이동식소형탈곡기 생산(민주조선 7.23)

- 강령군에서 능률 높은 신형 이동식소형탈곡기를 생산하고 있음. 군안의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 협동농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신형 이동식소형탈곡기는 규모가 작으면서 능률이 높음.
- 이 기계는 4~5HP로 돌리게 되어 있으며 임의의 포전에서 직접 난알탈기가 가능함. 난알탈기능력이 역시 높으며 운영노동력과 난알 1톤당 기름소비량도 적음.
- 김정일은 “여러 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그 이용률을 적극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로동신문 8.7)

-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의 공장참모부서 일군들이 직장, 작업반에 나가 설비와 자재,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김정일은 “농촌에 현대적인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 것과 함께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
- 유도로와 용선로 등 주물품 생산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갖추어놓은 직장노동계급은 튼튼한 생산토대에 의거 이미 8종에 10여 가지 주물품을 생산 보장함.
- 소재직장, 조립직장 등 다른 직장, 작업반들에서도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에 떨쳐나 연일 혁신하고 있음. 당 조직의 지도아래 공장에서는 능률적인 농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연간 계획을 150일 기간에 끝낼 결의를 안고(민주조선 8.12)

- 김정일은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높이자면 그에 대한 수리 정비사업도 잘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작업소에서는 연간 계획을 150일전투기간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서 작업소가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일터마다 집단적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게 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음.
- 주물, 가공작업반 노동자들은 차지당 용해시간을 앞당기고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여러 가지 주물품생산과 부속품가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음.
- 농기계수리작업반에서는 노동력관리를 통해 기술 관리를 정상적으로 잘하여 높이 세운 일정계획대로 농기계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있음.

○ 자체의 힘과 기술로(민주조선 8.12)

- 맹산군농기구공장 일군과 노동자들이 협동농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농기구와 영농자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날마다 수십㎡에 달하는 비닐박막을 재생하여 농장들에 공급해주고 있음. 현재 공장에서 생산된 재생박막은 투명도와 그 질에 있어서 전문공장에서 만든 비닐박막에 못지않은 것으로 농장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

- 공장에서는 늘어나는 농기구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소재생산기지를 번듯하게 꾸려놓고 각종 농기구를 생산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주고 있음.
- 탈곡기를 보다 능률적으로 개조(민주조선 8.27)
 - 단천시 령산협동농장에서 이미 있던 탈곡기를 능률 높은 벼종합탈곡기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 벼종합탈곡기는 지난해 농산제2작업반의 농장원의 고심어린 탐구 속에 창안되었으며 조력, 전력소비측면에서 종전에 쓰던 탈곡기보다 능률적임.
- 중소농기구를 원만히(민주조선 8.27)
 - 무산군 문암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를 위한 중소농기구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음.
 - 농장의 일꾼들은 중소농기구준비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 풀어주어 계획대로 진행해나가고 있음.
- 연간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전진(민주조선 10.3)
 - 김정일은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라고 말함.
 - 강계트랙터부속품공장의 일군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121.65%로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룸.
 - 공장에서는 유도로를 새롭게 개조하여 종전보다 용해시간과 노동력, 보수시간을 줄였으며 가열로를 개조하여 연소효율과 가열온도를 기술지표의 요구대로 보장함으로써 소재장입회수를 훨씬 늘리는 등의 기술혁신을 이뤄냄.
- 탈곡기의 능률을 높여(로동신문 10.15)
 - 웅진군안의 협동벌에서 가을걷이와 낱알탈기를 실시하고 있음. 성능 좋은 탈곡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낱이 갈수록 낱알탈기실적이 오르고 있음.
 - 김정일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려면 농촌에 트랙터와 수확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대적 농기계를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함.
 - 공장의 일꾼들은 지체 없이 탈곡기부속품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공장에서는 탈곡기부속품생산을 추진하고 생산된 부속품들을 가지고

협동농장에 나가 탈곡기 수리보수를 통해 탈곡기 가동률을 훨씬 높일 수 있게 해주었음.

□ 비료

○ 우리식 복합미생물비료를 연구도입(로동신문 7.16)

- 김정일은 “우리는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최근 애국복합미생물센터의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합미생물비료인 유기질발효촉진제를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이 유기질발효촉진제는 유기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종전과 달리 당을 쓰지 않으므로 원료가가 줄어들어 전기 자래를 쓰지 않아도 됨. g당 미생물수는 종전의 10배에 달하고 정보당 사용량은 보당 4kg으로 적으며 고체 상태이므로 다루기 쉬움.
- 청단군과 락랑구역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 도입해본 결과 알곡, 남새와 같은 농작물의 증수효과가 높았으며 종전 복합미생물비료를 생산, 이용할 때에 비해 원료 소비는 1/6, 물동량은 1/30~1/60으로 줄어들었음.

○ 대용비료를 적극 생산이용(로동신문 8.6)

- 김정일은 “농업부문 일군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혁명적 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안의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이 대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작물비배 관리에 적극 이용함으로써 좋은 작황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적으로 7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8배의 대용비료를 생산하여 땅을 기름지게 걸구고 농작물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였음.

○ 집짐승배설물을 이용한 공업적인 유기질비료생산기술(로동신문 8.9)

- 집짐승배설물을 이용한 공업적인 유기질비료생산기술은 발효조건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에 집짐승배설물을 넣고 숙성 발효시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집약적인 집짐승배설물처리기술임.
- 집짐승배설물은 비료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설물에 의한 환경오염

을 막을 수 있음.

- 자연 발효시켜 거름을 만드는 방법에 비해 생산면적을 줄이면서도 발효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음. 집짐승배설물이 자연적으로 발효되자면 45~60일 정도 걸리지만 공업적 방법에서는 길어도 25~30일, 짧은 경우 5~7일정도 걸린다고 함.
- 공업적으로 생산한 유기질비료는 악취와 유해물질이 없고, 손에 묻어나지 않아 운반과 시비에도 편리하다고 함. 이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집짐승배설물을 이용한 공업적인 유기질비료생산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 홍남비료련합기업소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민주조선 10.11)

- 홍남비료련합기업소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가 지난 9일 진행됨. 보고회에는 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태문이 기념 보고하였음.
- 주체48(1959)년 10월 9일 김일성이 당시의 홍남비료공장을 현지지도하고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한 것에 대하여 언급함. 또한 지난 50년간 기업소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 언급함.
- 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 관리를 통해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고 말함.

□ 장마철대비

○ 한포기의 곡식도 피해가 없게(민주조선 7.17)

- 김정일은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함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농작물비배관리와 함께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고 있음.
- 해당 단위에 내려간 위원회일군들은 배수양수장과 배수암거를 비롯한 고인물빠기 시설들에 대한 수리정비, 해안방조제 보수, 물길가시기 등 장마철 피해막이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함주군 안의 련포협동농장은 봄철 2,000m³의 토량을 처리하고 300m³의 장식 입히기를 짧은 기간에 진행하여 방대한 해안방조제 보수공사를 끝냈음.

○ 장마철 피해방지 대책을 빈틈없이(민주조선 7.18)

-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 큰물과 비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이미 도안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문, 해안방조제, 강하천들에서 큰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
 - 양수동력설비와 더불어 저수지, 배수문 등의 대상들에 수리정비와 개건보수 사업을 앞세우고 있음.
 - 천내군에서는 지난 시기 무더기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던 대상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여러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천내군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열흘 동안에 1,500m³의 강바닥 흙을 파내고 10여리 구간의 제방을 든든히 보강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로동신문 7.20)
- 박천군안의 협동농장에서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음. 군당위원회의 지도아래 군의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제방, 물길, 물모이뚝과 비탈밭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김정일은 “이상기후현상의 영향으로 가물다가도 무더기비가 내릴 수 있으므로 큰 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미리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군의 일군과 당원, 근로자들은 군적으로 10여개 소에 있는 수십 대의 배수양수설비에 대한 수리정비를 말끔히 끝내는 성과를 이룸. 또한 짧은 기간에 수백만m³의 토량을 처리하여 수십km의 배수로치기와 중소하천정리사업을 진행하였음.
 - 군에서는 배수양수장, 저수지, 배수문, 물길구조물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일군들을 내려 보내 책임성 높고 경험 많은 사람을 관리공, 운전공으로 꾸리고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해나가도록 도와주고 있음.
- 비바람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로동신문 7.31)
- 김정일은 “잘된 곡식이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곡산군안의 협동농장에서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덕흥, 룡현협동농장에서는 통지 정리된 논에서 자그마한 피해나 토지유실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평안, 료리협동농장에서도 청년작업반의 작업반원들이 년 초부터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의 작황이 그대로 알차게 여물도록 투쟁을 벌이고 있음.

○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민주조선 8.2)

- 안주시안의 협동농장의 농업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장마철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음.
-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송학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장마철에 있을 수 있는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연풍, 남철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 물도랑을 깊숙이 파고 강한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말장을 박고 새끼줄을 든든히 쳐주고 있음.

○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민주조선 8.7)

- 향산군의 농업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장마철 피해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군에서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강하천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 강냉이밭들레도랑치기와 양수동력설비의 수리정비, 예비부속품확보 등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당 대책을 세웠음.
- 천수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은 4km구간의 하천제방공사를 진행하여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하였음.

□ **살림집**

○ 평양시에 1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자(민주조선, 로동신문 8.8)

- 김일성의 탄성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수도건설자들의 쫓기모임이 7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음.
- 김정일은 이번에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받기하시고 살림집구역도 확정해주었으며 설계로부터 건설단계와 역량편성, 지휘체계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취하였음.

- 김정일은 파국적인 세계경제위기로 많은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 때에 한 도시에 10만 세대나 되는 살림집을 몇 해 사이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게 되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 시책이라고 강조함.

- 김정일은 모든 건설자가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한 개의 블록을 조립하고 한㎡의 미장을 해도 새 세기의 수도건설자답게 알뜰히 하여 10만 세대 살림집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없게 질적으로 건설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침수지역 주민세대살림집 및 공공건물건설 적극 추진(민주조선 9.11)

- 김정일은 “희천언제를 쌓은 경우 침수지역과 발전소구역에서 철거시켜야 할 세대가 적지 않은 것만큼 품을 좀 들이더라도 침수지역 주민들의 살림집을 먼저 지어 주어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켜야 한다.”라고 말함.

- 룡림군 희천발전소 침수지역 주민세대살림집 및 공공건물건설이 활기를 띠고 진척되고 있음.

- 건설지휘부의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 현재 소층아파트 50동 610여 세대에 대한 기초공사가 끝났으며 그 중 43동 176세대에 대해서는 1층벽체축조를, 16동 69세대에 대해서는 2층벽체축조, 2동 7세대에 대한 벽체축조를 완성하였음.

○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하부구조공사 활발(로동신문 10.2)

- 김정일은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세계적인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말함.

- 건설지휘부의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장에 전개하여 가설건물공사를 끝낸 수도건설부와 군인건설자, 성, 중앙기관의 여러 단위 일군과 건설자들이 맡은 건설부지에서 지대정리와 기초굴착을 해나가고 있음.

-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 위생실 등 살림집내부가 특색있게 꾸러지며 난방보장조건도 원만히 갖추어지게 됨.

- 수도의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은 김일성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임.

○ 두루섬에 일떠선 사회주의선경마을(로동신문 10.11)

- 락랑구역 중단협동농장에 남새3작업반부락에 120여 동의 농촌살림집을 연이어 세움. 여러 칸의 살림방과 농장원들이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지붕, 울타리, 대문도 민족적 형식으로 건설됨.
- 김정일은 “우리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잘하여 우리나라의 농촌을 말 그대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낙원으로, 모든 농촌마을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함.
- 구역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농장에서는 김일성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농장자체로 모든 살림집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건설할 통이 큰 목표를 세움.

□ 도시미화사업

○ 보다 위생 문화적으로(민주조선 10.8)

- 혜산시에서 생활환경을 보다 위생 문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시인민위원회에서는 9, 10월 위생월 기간에 시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가두인민반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혜흥동, 신흥동, 혜산동들에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에 외장재를 다시 발라 거리를 환하게 변모시켜놓음. 혜장동, 혜강동, 혜신동들에서는 간선도로에 석비레를 깔고 인도를 새로 포장하여 거리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음.
- 춘동, 마산동, 성후동들에서는 강하천정리보수사업에 힘을 넣어 춘동천과 성후천을 비롯한 강하천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있음.

○ 도시와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려나가자(민주조선 10.13)

- 10월은 도시미화 월간으로 지정함. 도시미화사업은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일터를 알뜰히 꾸려 도시와 농촌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일신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김정일은 “도시미화사업을 잘하여야 도시를 더욱 문명하게 꾸릴 수 있으며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함.
- 도, 시, 군인민위원회에서는 100일 전투의 불길높이 도시미화 월간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환하고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야 함.

- 도시미화 월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과 근로자들이 사업에 대한 옳은 입장과 관점을 갖도록 해야 함. 또한 도시미화 월간에는 가을걷이와 국토관리총동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므로 조직사업을 잘 진행하여야 함.
 - 해당 단위들에서는 건물의 외장재바르기, 가을철나무심기, 구획정리, 울타리보수, 녹지조성, 물도랑정리를 비롯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월간사업계획을 대상별로 세부화하여 과학적으로 세우고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집행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 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월간사업에서 요구되는 자재, 설비를 제때에 보장해야 함. 또한 장악총화사업을 잘하여야 이 사업에 대한 대중의 자각과 열의를 더욱 높여 도시미화 사업이 군중적으로 더욱 활기차게 벌어지도록 할 수 있음.
- 생활환경을 보다 알뜰하게, 군중적으로 활발히(민주조선 10.13)
- 중산군인민위원회에서 100일 전투의 불길높이 군안의 거리와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10월 도시미화 월간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김정일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향토애와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학교, 자기 군과 도를 알뜰하고 깨끗하게 꾸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위원회는 100여동의 아파트벽체와 울타리들을 보수하고 외장재를 바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물도랑정리와 오물장 및 위생시설정리, 집집승우리들을 깨끗하게 가셔내고 보수 정리하는 사업을 맡은 위원회 일군들은 짧은 기일 안에 계획된 작업과제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흥군인민위원회에서는 날짜별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이어 매 단위들의 실정에 맞게 당면하게 해야 할 과제를 분담해주고 있음.
 -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대한 외장재바르기, 울타리보수, 하천정리 등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 읍거리 가로등을 새맛이 나게(민주조선 10.14)
- 김형직군인민위원회에서 읍거리의 낡은 가로등을 현대적미감이 나는 새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를 힘있게 실시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1단계로 먼저 1,500m구간에 대한 가로등공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음.
- 군안의 20여개 기관, 기업소에 구체적인 분담을 주고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끝내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음.

○ 동의 면모를 더욱 일신(민주조선 10.16)

-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2동에서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가정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동에서는 모든 가정에서 동, 인민반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동, 인민반사업에 모범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 동에서는 거리와 마을을 꾸리는 사업이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같이 인식시켜 그들이 옳은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침땅

○ 백 수십 정보의 갈밭을 논벌로(민주조선 8.7)

- 김정일은 “새땅을 찾아내어 부침땅면적을 늘이는 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라고 말함.
- 최근 남포시에서 개암동지구, 진도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 있던 백수십 정보에 달하는 갈밭을 논벌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룩함.
- 부침땅 면적이 적은 남포시의 특성을 놓고 볼 때 새땅찾기는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더욱 절실한 문제임. 시에서는 알곡증산의 중요한 방도를 새땅을 찾는데서 찾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쏟음.
- 갈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과제였음. 개암동지구 갈밭만 개간하자고 하여도 2,400여 m의 뚝을 쌓고 8만 m³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였으며 50만m³의 물을 퍼내고 1,500톤의 갈뿌리와 부득뿌리를 걷어내야 했음.
- 시에서는 이어 갈밭자리에 푼 논들에 튼튼하게 키운 벼모를 제철에 내고 논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음.

□ 현지도

○ 중앙양묘장과 타조목장을 현지도(민주조선, 노동신문 10.3)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장성택, 박남기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평양시교외에 있는 타조목장을 현지도 함.
- 김정일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건설된 현대적인 온실과 광활한 양묘장을 바라보며 묘목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훌륭히 실현한데 대한 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나라의 수립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앙양묘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묘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함.
- 김정일은 목장의 일군과 종업원들이 몇 해 사이에 능력 확장공사를 비롯한 반대한 건설을 끝내고 생산을 무려 10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목장의 현대화를 훌륭히 실현하고 있는데 대만족을 표시함.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도(노동신문 10.9)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박남기, 장성택과 함께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하였음.
- 김정일은 기계화작업반을 비롯한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올해농사형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함.
- 김정일은 농장의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풍작을 이뤄냈다고 만족을 나타냄.
- 김정일은 아담하게 꾸려진 여러 칸의 살림방과 부엌, 집짐승우리와 텃밭들을 일일이 돌아보고 농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문화주택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함.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여 농장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토대로 지력 높이기 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함.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도(민주조선 10.10)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부장 박남기, 장성택과 함께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함.
- 김정일은 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할 일념으로 농장의 실정에 맞는 알곡종자를 옳게 선택한 것을 토대로 논벼비배관리와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어 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농장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였음.
- 김정일은 아담하게 꾸려진 여러 칸의 살림방과 부엌, 집집승우리와 텃밭들을 일일이 돌아보고 농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무화주택을 훌륭히 건설한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산기슭마다 즐비하게 늘어선 문화주택, 특색있게 건설된 문화후생시설 및 공공건물들과 “추리동네”, “살구동네”를 비롯한 농장의 전경을 바라보며 만족을 표시함
- 또한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농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함.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북중 교역 동향

1.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2.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9년 7월 중 남북교역액은 14,026만 달러로 전년 동월 18,074만 달러에 비해 22.4% 감소(전월 11,773만 달러 대비 19.1% 증가)
- 반입은 7,55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231만 달러에 비해 8.2% 감소(전월 6,115만 달러 대비 23.5%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9.9%, 농림수산물 24.8%, 전자전기제품 14.8%, 광산물 6.2%, 기계류 6.2% 등임.
- 반출은 6,47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843만 달러에 비해 34.2% 감소(전월 5,658만 달러 대비 14.4%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54.7%, 전기전자제품 14.6%, 기계류 9.9%, 생활용품 5.2%, 농림수산물 4.5% 등임.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9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873만 달러로 전월 1,662만 달러 대비 12.7% 감소하고 7월 전체 반입액 7,552만 달러의 24.8%를 차지했음.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반입 농림수산물인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58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7.7%), 분유 등 축산물이 1.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 합판 등 임산물이 1.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9%), 어패류 등 수산물이 1,28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7.0%)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9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94만 달러로 전월 261만 달러 대비 12.6%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5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0%), 분유 등 축산물이 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물이 10.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19.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9년 8월 중 남북교역액은 13,66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6,277만 달러에 비해 16.1% 감소(전월 14,026만 달러 대비 2.6% 감소)
- 반입은 8,28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880만 달러에 비해 5.1% 증가(전월 7,553만 달러 대비 9.6%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52.6%, 농림수산물 18.9%, 광산물 5.0%, 전기전자제품 12.9%, 기계류 4.6% 등임.
- 반출은 5,38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397만 달러에 비해 35.9% 감소(전월 6,473만 달러 대비 16.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4.5%, 섬유류 48.6%, 기계류 10.5%, 전기전자제품 18.3%, 생활용품 5.7% 등임.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9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567만 달러로 전월 1,873만 달러 대비 16.3% 감소하고 8월 전체 반입액 8,281만 달러의 18.9%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45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5.1%), 합판 등 임산물이 0.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1,11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3.5%)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9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28만 달러로 전월 294만 달러 대비 22.4% 감소하고 8월 전체 반출액 5,383만 달러의 4.2%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8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5%), 분유 등 축산물이 14.3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합판 등 임산물이 6.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19.7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9년 9월 중 남북교역액은 17,32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6,782만 달러에 비해 3.2% 증가(전월 13,664만 달러 대비 26.8% 증가)
- 반입은 9,87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960만 달러에 비해 0.9% 감소(전월 8,281만 달러 대비 19.2%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9.9%, 농림수산물 24.8%, 전기전자제품 14.8%, 광산물 6.2%, 기계류 6.2% 등임.
- 반출은 7,44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822만 달러에 비해 9.2% 증가(전월 5,383만 달러 대비 38.4%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54.7%, 전기전자제품 14.6%, 기계류 9.9%, 생활용품 5.2%, 농림수산물 4.5% 등임.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9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689만 달러로 전월 1,567만 달러 대비 7.8% 증가하고 6월 전체 반입액 9,872만 달러의 17.1%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49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5.0%), 합판 등 임산물이 4.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1,19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2.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9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53만 달러로 전월 228만 달러 대비 11.0% 증가하고 6월 전체 반출액 7,448만 달러의 3.4%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1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9%), 분유 등 축산물이 13.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9.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2%), 어패류 등 수산물이 11.1달러(전체 반출액의 0.15%)를 차지했음.

표 1 2009년 7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2,064,163	5,832	8	농산물	2,151,483	2,570	9
쌀	200,000	176		쌀	24,800	37	
땅콩	15,600	29		감자	104,020	185	
참깨	31,280	88		대두	6,000	12	
들깨	247,225	201		기타두류	4,086	8	
무	22,000	44		밀가루	200,233	109	
마늘	761,040	1,219		참깨	33,000	40	
기타채소	79,285	102		들깨	18,000	14	
고사리	368,560	2,618		기타채유종실	4,000	1	
영지버섯	2,000	13		수박	1,932	2	
표고버섯	72,382	675		멜론	20	-	
기타버섯류	64,369	393		토마토	119	-	
밤	66,600	104		마늘	891,520	847	
호도	240	2		기타채소	2,876	5	
들기름	1,418	3		밤	20,400	41	
기타식물성유지	1,000	8		기타산식물	103,159	58	
기타유지가공품	14,839	34		대두유	443,980	456	
제조담배	2,120	15		기타식물성유지	80	3	
식물성한약재	51,205	81		마아가린	8,335	10	
물	44,000	16		식물성액즙	60	2	
기타농산가공품	19,000	10		사료	6,000	9	
				효모류	2,085	10	
				된장	580	1	
				고추장	2,600	4	
				기타소스류	3,987	13	
				커피조제품	783	3	
				제조담배	1,339	37	
				소주	3,040	4	
				맥주	7,220	6	
				원당	4,000	3	
				정당	14,965	11	
				물	3,994	4	
				기타음료	23,597	48	
				비스킷	2,968	6	
				곡류가공품	89,881	222	
				빵	28,099	95	
				면류	50,799	103	
				빙과류	736	2	
				기타농산가공품	34,435	67	
				견	3,371	84	
				면	384	9	
축산물	300	15	0	축산물	15,712	70	0
기타축산물부산물	300	15		소시지	906	2	
				로얄제리	50	-	
				우유	4,000	9	
				분유	1,988	9	
				기타낙농품	2,969	2	
				난류	3,125	12	
				모류	2,674	36	
임산물	2,850	14	0	임산물	61,533	106	0
합판	50	-		합판	32,804	50	
기타목재류	2,800	14		섬유판	9,319	13	
				건축용목제품	595	3	
				기타목재생활용품	170	2	
				기타목재류	17,000	31	
				수목류	1,645	9	
수산물	2,832,948	12,872	17	수산물	186,810	194	0

기타어류	51,445	95		낙지	1,660	4
새우	347,172	1,894		김	66	-
기타계	8,320	33		미역	149,460	65
물어	153,774	581		기타수산물가공품	34,624	123
낙지	280	1		수산물	1,000	2
피조개	60	-				
기타조개	687,315	1,216				
기타연체동물	219,920	540				
미역	190,572	179				
기타수산물통조림	9,000	25				
건조수산물	574,615	5,879				
기타수산물가공품	524,834	1,873				
기타수산물	65,641	556				
합 계	4,900,261	18,732		합 계	2,415,538	2,941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7호(2009.7.1~7.31).

표 2 2009년 8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342,433	4,517	6	농산물	1,497,959	1,881	4
참깨	35,510	98		쌀	11,840	18	
들깨	61,200	39		감자	95,173	166	
기타곡실류	12,308	59		밀가루	164,600	111	
마늘	704,420	1,132		참깨	41,430	51	
기타채소	21,600	57		들깨	9,000	7	
고사리	315,170	2,346		자두	30	-	
표고버섯	33,350	372		마늘	782,400	743	
기타버섯류	37,779	276		기타채소	2,827	5	
밤	25,790	50		밤	20,602	37	
대두유	158	-		은행	2,400	5	
참기름	868	2		기타산식물	92,600	14	
들기름	2,839	7		대두유	27,008	32	
기타유지가공품	648	1		기타식물성유지	40	1	
박류	8,000	-		마아가린	2,122	2	
간장	49,612	32		식물성액즙	30	1	
된장	12,011	22		박류	150	2	
제조담배	1,160	8		효모류	705	2	
식물성한약재	20,010	17		된장	1,200	2	
				카레	2,800	7	
				기타소스류	8,612	25	
				기타식물성재료	400	-	
				커피조제품	2,297	7	
				제조담배	3,209	87	
				인삼류	100	4	
				소주	4,310	5	
				맥주	6,970	5	
				위스키	18	-	
				원당	4,000	3	
				정당	6,265	5	
				물	3,191	3	
				음료베이스	950	1	
				비스킷	2,690	5	
				곡류가공품	61,320	148	
				빵	42,546	137	
				면류	44,450	94	
				빙과류	368	1	
				기타농산가공품	46,352	91	
				견	1,955	49	
				모	490	3	
				면	510	3	
축산물	-	-	0	축산물	21,334	143	0
				소시지	255	1	
				로얄제리	50	-	
				분유	7,455	30	
				기타낙농품	2,155	2	
				난류	6,066	18	
				모류	5,354	92	
임산물	3,000	3	0	임산물	60,601	60	0
합관	3,000	3		합관	1,438	2	
				섬유판	10,243	30	
				건축용목제품	50	-	
				기타목재생활용품	25	-	
				기타목재류	1,245	2	
				수목류	47,600	26	

수산물	3,016,596	11,152	14	수산물	86,219	197	0
기타어류	141,525	294		김	62	-	
새우	391,450	2,367		미역	49,685	20	
기타계	11,460	68		기타해조류	366	11	
문어	28,000	112		건조수산물	2,075	18	
낙지	1,386	4		기타수산가공품	34,031	148	
기타조개	1,119,905	1,657					
기타연체동물	301,631	423					
미역	69,732	59					
건조수산물	375,125	3,753					
기타수산가공품	535,254	1,964					
기타수산물	41,128	452					
합 계	4,362,029	15,672		합 계	1,666,113	2,281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8호(2009.8.1~8.31).

표 3 2009년 9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529,137	4,903	5	농산물	1,599,254	2,189	3
참깨	31,120	69		쌀	48,200	58	
들깨	6,600	11		감자	99,712	181	
마늘	721,410	1,222		밀가루	55,000	19	
기타채소	188,150	305		참깨	39,000	42	
고사리	333,900	2,512		들깨	19,980	16	
송이버섯	1,231	101		기타채유종실	35	0	
기타버섯류	62,332	326		사과	225	1	
밤	24,500	103		배	1,500	2	
은행	910	4		자두	22	0	
대두유	6,300	8		바나나	641	2	
참기름	1,688	4		마늘	762,500	724	
들기름	4,982	9		기타채소	2,489	4	
기타유지가공품	9,418	14		기타버섯류	1,200	14	
박류	8,000	0		밤	87,720	169	
제조담배	1,880	15		기타산식물	22,452	7	
식물성환약제	109,916	181		대두유	125,488	131	
기타농산가공품	16,800	19		들기름	16,790	59	
				고추장	2,600	4	
				기타소스류	5,835	15	
				커피조제품	2,319	9	
				제조담배	2,490	51	
				소주	2,520	5	
				맥주	6,420	5	
				위스키	217	16	
				기타주류	21	0	
				정당	60	0	
				물	66,803	7	
				기타음료	156	0	
				비스킷	2,093	3	
				곡류가공품	65,200	162	
				빵	40,436	127	
				면류	66,523	182	
				빙과류	350	1	
				기타농산가공품	47,894	121	
				견	1,214	31	
				모	2,569	13	
				면	580	7	
축산물	0	0	-	축산물	20,605	133	0
				닭고기	1,500	4	
				철면조고기	0	0	
				소시지	1,975	4	
				분유	4,500	80	
				기타낙농품	2,523	4	
				난류	7,303	23	
				모류	2,804	18	
임산물	15,630	44	-	임산물	80,902	96	0
합판	13,600	34		합판	70,177	78	
섬유판	30	0		섬유판	3,995	4	
수목류	2,000	11		건축용목제품	3,675	9	
				젓가락	50	0	
				목제식탁용품	25	0	
				기타목재생활용품	10	0	
				기타목재류	2,233	2	
				수목류	687	1	
				천연고무	50	1	

수산물	5,667,753	11,939	12	수산물	134,084	111	0
기타어류	68,928	231		기타어류	300	3	
새우	286,575	1,788		기타조개	6,300	4	
기타게	41,440	199		기타연체동물	3,040	2	
오징어	28,000	39		김	53	0	
문어	396,498	1,671		미역	98,230	42	
피조개	2,248	7		기타해조류	1,512	2	
기타조개	2,069,537	2,748		기타수산물가공품	24,649	58	
기타연체동물	2,097,144	2,499					
미역	89,655	77					
건조수산물	51,625	529					
기타수산물가공품	373,592	1,392					
기타수산물	162,511	758					
합 계	7,212,520	16,887		합 계	1,834,845	2,529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9호(2009.9.1~9.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2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소 계	119,583	3,729	5,170,999	126,365	7,214	5,844,918	11,015,917	673,919
2009.01	2,538	229	68,582	2,842	422	44,438	113,020	△24,144
2009.02	2,529	240	59,142	2,921	419	41,720	100,863	△17,422
2009.03	2,801	235	67,733	3,091	405	41,012	108,745	△26,721
2009.04	2,955	234	64,722	3,059	431	40,842	105,564	△23,880
2009.05	2,938	228	64,563	2,963	455	42,269	106,832	△22,294
2009.06	2,895	265	61,152	3,391	409	56,587	117,739	△4,565
2009.07	3,013	231	75,525	3,649	410	64,733	140,258	△10,792
2009.08	3,005	229	82,810	3,397	429	53,829	136,639	△28,981
2009.09	3,622	241	98,720	3,798	440	74,480	173,200	△24,240
소 계	26,296	454	642,949	29,111	3,820	459,911	1,102,860	△183,038
총 계	145,879	4,183	5,813,948	155,476	11,034	6,304,829	12,118,777	490,881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9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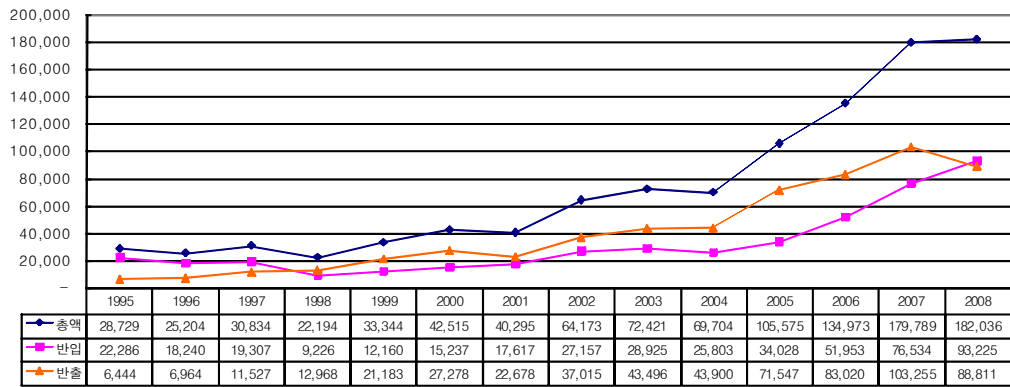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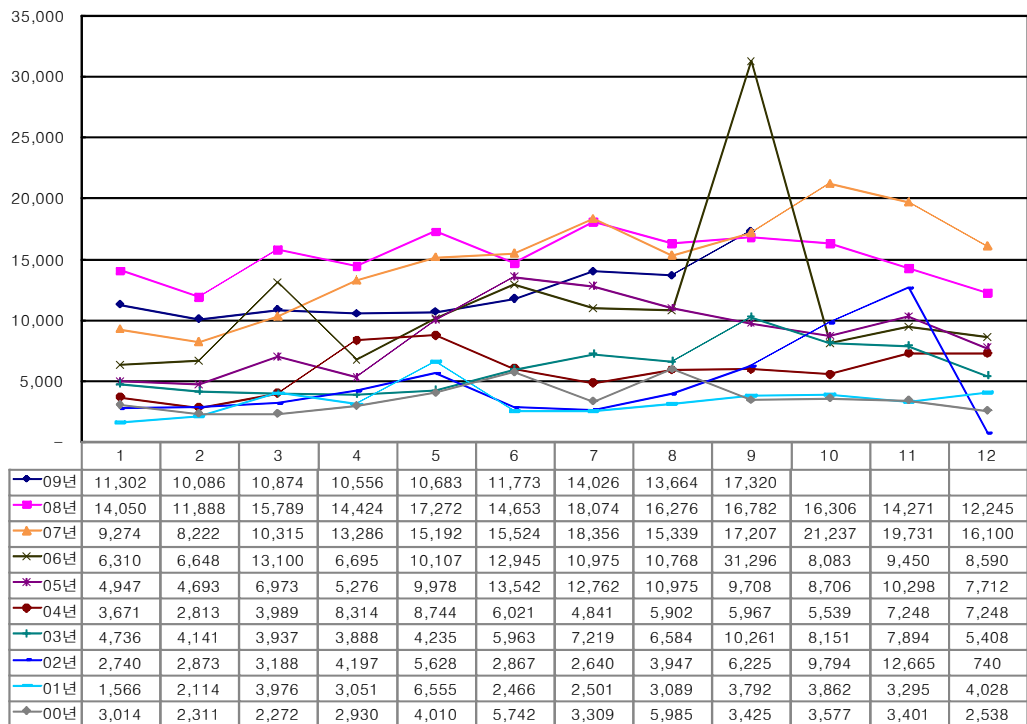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129,675
소 계	439,690	3,302	50,749	805,782	1,299,543	871,176	23,453	27,232	19,670	941,621	2,241,164	△357,922
2009.1	6,661	-	13	13,428	20,102	2,347	87	99	206	2,739	22,841	△17,363
2009.2	2,436	-	17	9,461	11,914	2,690	66	122	261	3,139	15,053	△8,775
2009.3	2,331	-	3	9,976	12,310	2,042	147	201	216	2,606	14,916	△9,704
2009.4	2,895	-	53	10,838	13,786	2,226	53	218	398	2,895	16,681	△10,891
2009.5	4,355	-	28	14,586	18,969	2,324	-	106	177	2,607	21,576	△16,362
2009.6	4,903	-	79	11,642	16,624	2,231	-	86	296	2,613	19,237	△14,011
2009.7	5,832	15	14	12,872	18,733	2,570	70	106	194	2,940	21,673	△15,793
2009.8	4,517	-	3	11,152	15,672	1,881	143	60	197	2,281	17,953	△13,391
2009.9	4,903	-	44	11,939	16,886	2,189	133	96	111	2,529	19,415	△14,357
소 계	38,833	15	254	105,894	144,996	20,500	699	1,094	2,056	24,349	169,345	△120,647
총 계	478,523	3,317	51,003	911,676	1,444,539	891,676	24,152	28,326	21,726	965,970	2,410,509	△478,569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17~219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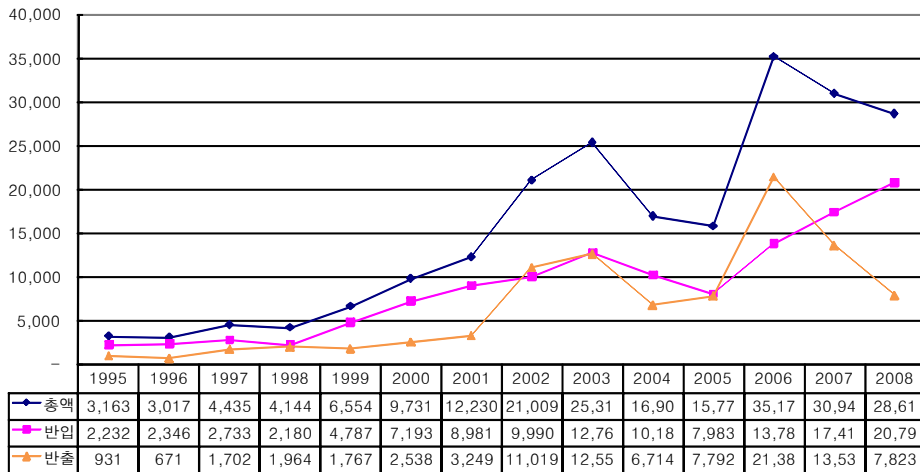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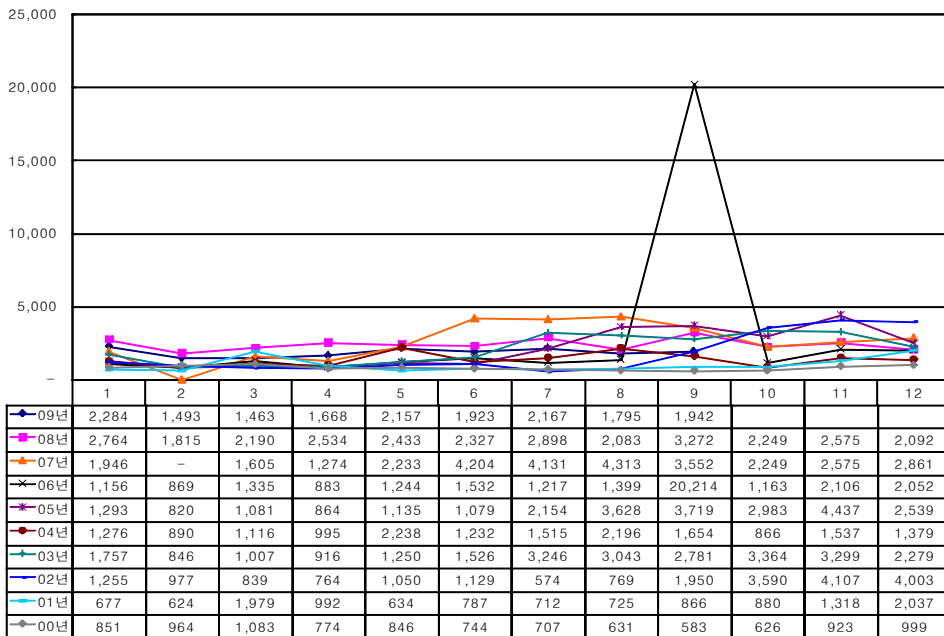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9년 7~9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이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없음. 9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14개로 전체 488개 기업(단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361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17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9년 9월 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안흥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매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240만불-	'03.10.31 (*04.3.20)*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제배 및 삼배제품	평양, 황해도	1,500만불*	'04.2.18 (*08.5.27)*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제배 및 가공	평양	546천불*	'04.8.21 (*04.8.21)*
(주)제이유네트위크**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제배 및 판매	황북 봉산 황남 연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제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만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황북/황남,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통일고려인삼**	광명성총회사	인삼제배 및 가공공장 운영(북한 내수 및 해외판매)	평양, 황북 봉산군	285만불*	'07.12.31 (*07.12.31)*
대동수산**	광명성총회사	수산물 가공업	남포	500만불*	'08.06.20 (*08.06.20)*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 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6호.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발효 (통일부, 2009. 7. 31)

○ 지난 2009. 1. 30일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등 법정 절차를 거쳐 2009. 7. 31일부터 발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법 제17조)
- ‘협력사업 신고제’를 도입하여,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 내에서 50만 달러 이하로 투자하는 사업은 신고만으로 협력사업 추진 가능(법 제17조의2)

② 행정조사제도 도입

-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등 행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실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도록 함.
(법 제25조의4)

③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 간소화

- 수시 북한 방문자로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 중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수송장비의 승무원 등은 방문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방북 가능(법 제9조제6항)
- 정부 승인 국제행사 참석을 위한 접촉이나 당국간 합의에 의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과의 접촉 등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북한주민과 접촉 가능(법 제9조의2제2항)

□ 취약계층 및 영유아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통일부, 2009. 8. 3)

- 제2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8.3)에서 2009년도 민간단체 개별사업 중 취약계층 및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중 주민생활 기여도,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영유아·산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1차적으로 기금지원을 결정
 - 10개 단체 34억 8,600만원, 사업운영관리비 8,700만원 등 총 35억 7,300만원

지원 내역 (10개 단체)

단위 : 백만원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결정
그린닥터스	개성 협력병원을 통한 대북의료지원	66
남북나눔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486
등대복지회	북한 장애인 어린이 종합복지지원	630
민족사랑나눔	영양개선 및 복지지원, 보건의료 지원	208
우리민족서로돕기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 의료 지원	540
유진벨	결핵 퇴치 및 결핵병원지원	630
원불교	취약계층지원, 어린이급식 및 아동용품 지원	101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어린이 영양제 생산 원료 지원	198
한국건강관리협회	어린이보건 지원사업	69
한국제이티에스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 의료 지원	558
합 계	10개 사업	3,486

□ 「교역보험 취급기준」 개정안 본격 시행

(통일부, 2009. 8. 10)

- 정부는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된 교역보험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역보험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2009. 8. 10일부터 「개성 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과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등을 시행

①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도입

-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비상위험을 이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 및 위탁가공비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
- 가입주체 : 개성공단 입주기업(본사)
- 담보위험 : 수용, 전쟁·내란, 약정불이행, 북측의 통행 제한·금지 등
- 보상수준 :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
- 가입한도 : 기업별 10억원
- 가입방식 : 1년 단위 포괄 약정(1년간 신고된 거래 일체)
- 보험료율 : 연 1%(보험금액 기준)

②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도입

- 보험계약자와 개성법인간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이 비상위험을 이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구매자에게 납품이 중단된 경우, 납품중단에 따른 손실의 일정부분(위약금 해당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
- 가입주체 : 개성공단 입주기업(본사)
- 담보위험 : 수용, 전쟁·내란, 약정불이행, 북측의 통행 제한·금지 등
- 보상수준 :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
- 가입한도 : 기업별 5억원
- 가입방식 : 1년 단위 포괄 약정(1년간 신고된 거래 일체)
- 보험료율 : 연 1%(보험금액 기준)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 교역보험 적용 대상거래를 물품 외에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

※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교역을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2004년 5월부터 반입·반출보험 등 교역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 12.1조치 해제와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정상운영 재개

(통일부, 2009. 8. 20, 2009. 9. 4)

- 북한은 8. 20일 북측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우리측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에게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1일 북측이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8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어서 북측 중

양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우리측 인원에 대한 출입 및 체류 제한조치(12.1 조치)를 다음과 같이 원상태로 회복한다고 통보.

- 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출입, 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
 - 2) 개성공업지구 기업 및 단체관계자들의 출입, 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
 - 3) 판문역과 파주역사이의 화물열차운행을 이전과 같이 재개하며 해당 관계자들의 출입, 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
 - 4)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정상 운영하며 해당 관계자들의 출입, 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남북 양측은 협의를 갖고, 지난 해 12월 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9월 7일부터 정상운영하기로 합의(9.3).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설치

(통일부, 2009. 9. 22)

- 통일부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이 10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신설(9.22 국무회의 심의·의결, 10.5 발효).
- 신설되는 지원단은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의 개발·관리 지원을 전담하게 되며, 지원단의 조직은 2과 1팀 총 25명으로 규모와 기능에 있어 현 개성공단사업지원단(3팀 25명)과 동일.

□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 결과

(통일부, 2009. 10. 14)

- 2009. 10. 14일 남과 북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
- 우리측 제안 및 요구 사항
- 임진강 사고(9.6)에 대하여 북측의 책임있는 당국이 공식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
 - 임진강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을 촉구

-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
 - 1)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2) 상호협력의 원칙, 3) 신뢰의 원칙
-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방류계획 사전통보체제와 홍수예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 북측의 반응

-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해 조의를 표명
- 방류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 양측의 의견 접근 사항

- 북측은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
- 남과 북은 조속히 차기 회담을 개최하여 홍수예보체제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함.

□ 대한적십자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제공 제의

(대한적십자사, 2009. 10. 28, 연합뉴스 10. 29)

- 대한적십자사는 10. 26일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앞으로 보내는 전통문을 통해, 지난 10. 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의 북측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감안하여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옥수수 1만톤, 분유 20톤, 의약품을 지원할 것임을 통보.
- 이와 관련된 통일부의 브리핑 내용
 -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10.16)에서 북측은 우리측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품목이나 수량은 제시하지 않았음.
 - 분배 투명성 문제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임. 그러나 실무접촉(10.16)에서 그 문제까지 논의하지 않았음.

<자료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9. 7. 31 발효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횡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이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그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 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3(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 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 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

- 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남북한 방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이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자료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7. 31 발효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준용규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⑨ 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16조(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17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18조(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 제19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제21조(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3조(심사 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5조(반출·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7일 전까지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2. 대금결제 방법
3. 반출·반입 유효기간
4. 반출·반입 승인 조건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물품등 반출·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청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 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해지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37조(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제39조(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사무소·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나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방문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방문신고를 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방문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승인받은 협력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받은 협력사업이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으로 본다.
- 제7조(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 ②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한다.
-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료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7. 31 발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신고서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11조(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2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13조(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4조(협력사업 신고서)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져 한다.
-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 제3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반출·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¹⁾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9.10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12	-	9,966	-	한국 2,437,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긴급지원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09.1~10	-	3,276	-	유엔긴급지원자금 1,900, 노르웨이 412, 캐나다 330, 호주 261, 스웨덴 230, 스위스 69, 핀란드 40, 룩셈부르크 35
총 계	-	175,395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9)

표 2 2009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10.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FAO	유엔긴급기금	1,150,001	여름 주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유엔긴급기금	1,700,001	이모작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27)
		소계 2,850,002	
국제적십자연맹	핀란드	395,257	보건 및 의료 지원
노르웨이 적십자사	노르웨이	2,100,187	기초보건 인프라 지원(PRK-09/002/IFRC)
호주적십자사	호주	521,921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스웨덴 적십자사	스웨덴	1,284,400	공공보건 긴급지원
UNICEF	유엔긴급기금	1,101,300	북부지역 어린이 질병예방 (CERF 09-CEF-015)
	유엔긴급지원	696,784	5개도의 어린이 질병예방(CERF 09-CEF-049)
	호주	695,894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룩셈부르크	351,124	식수, 위생을 포함한 종합 영양지원
		소계 2,845,102	
UNPF	유엔긴급기금	154,883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유엔긴급기금	99,838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소계 254,721	
WFP	유엔긴급기금	6,493,725	홍수피해, 식품 및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유엔긴급기금	5,800,000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호주	1,391,788	긴급 식량지원
	노르웨이	2,022,402	긴급 식량지원(PRK-09/003/WFP)
	캐나다	3,301,127	식량지원(M-012909)
	스위스	685,788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소계 19,694,830	
WHO	유엔긴급기금	1,100,000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14)
	유엔긴급기금	700,171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49)
	스웨덴	1,013,941	WHO/HAC를 통한 위기 국가 지원
		소계 2,814,112	
합 계		32,760,532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9)

표 3 2009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10.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유엔긴급기금	FAO	1,150,001	여름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식량	유엔긴급기금	WFP	6,493,725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CERF 09-WFP-018)
	유엔긴급기금	WFP	5,800,000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유엔긴급기금	FAO	1,700,001	이모작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호주	WFP	1,391,788	긴급 식량지원
	캐나다	WFP	3,301,127	식량지원(M-012909)
	스위스	WFP	685,788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노르웨이	WFP	2,022,402	긴급 식량지원(PRK-09/003/WFP)
			소계 21,394,831	
보건	유엔긴급기금	UNPF	154,883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유엔긴급기금	WHO	1,100,000	모자 보건 개선(CERF 09-WHO-014)
	유엔긴급기금	UNPF	99,838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유엔긴급기금	WHO	700,171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49)
	유엔긴급기금	UNICEF	696,784	5개도의 어린이 질병예방(CERF 09-CEF-049)
	유엔긴급기금	UNICEF	1,101,300	북부지역 어린이 질병예방 (CERF 09-CEF-015)
	노르웨이	노르웨이 적십자사	2,100,187	기초보건 인프라 지원(PRK-09/002/IFRC)
	스웨덴	WHO	1,013,941	WHO/HAC를 통한 위기 국가 지원
	스웨덴	스웨덴적 십자사	1,284,400	공공보건 긴급지원
	핀란드	국제적십 자연맹	395,257	보건 및 의료분야 지원
			소계 8,646,761	
식수 위생	호주	적십자	521,921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호주	UNICEF	695,894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소계 1,217,815	
종합	룩셈부르크	UNICEF	351,124	식수, 위생을 포함한 종합 영양지원
합 계			32,760,532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9)

표 4 2009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10.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호주	WFP	1,391,788	긴급식량지원
	적십자	521,921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UNICEF	695,894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소계	2,609,603	
캐나다	WFP	3,301,127	식량지원(M-012909)
유엔긴급기 금 (CERF)	FAO	1,150,001	여름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FAO	1,700,001	이모작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UNICEF	1,101,300	북부지역 어린이 질병예방(CERF 09-CEF-015)
	UNICEF	696,784	5개도의 어린이 질병예방(CERF 09-CEF-049)
	UNPF	154,883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UNPF	99,838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WFP	6,493,725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WFP	5,800,000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WHO	1,100,000	모자 보건 개선(CERF 09-WHO-014)
	WHO	700,171	모자보건 개선(CERF 09-WHO-049)
	소계	18,996,703	
스위스	WFP	703,78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핀란드	국제적십 자연맹	395,257	보건 및 의료분야 지원
룩셈부르크	UNICEF	351,124	식수, 위생을 포함한 종합 영양지원
노르웨이	WFP	2,022,402	긴급 식량지원(PRK-09/003/WFP)
	노르웨이 적십자사	2,100,187	기초보건 인프라
	소계	4,122,589	
스웨덴	WHO	1,013,941	WHO/HAC를 통한 위기 국가 지원
	스웨덴 적십자사	1,284,400	공공보건 긴급지원
	소계	2,298,341	
합 계		32,760,532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9)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UN/ESCAP,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잡종 벼 보급사업 지원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잡종벼(hybrid rice) 사업을 지원키로 함.
- 유엔은 중국과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12개국을 대상으로 잡종벼 기술을 보급키로 함.
- 참여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피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티모르 레스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년 반 정도 계속될 이 사업은 잡종벼 재배를 통해 개도국 및 최빈국의 쌀 수량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중국의 경험에 의하면 잡종벼 기술은 농지와 물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위당 수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식량안보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ESCAP, UN supports hybrid rice project to tackle food insecurity in Asia Pacific, Aug. 24, 2009)

□ WFP, 북한 여성 3분의 1 영양실조 상태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올해 말까지 원조가 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WFP는 유엔이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를 설문한 결과 5세 이하 어린이의 37%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여성의 3분의 1이 영양실조 및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함.
- 현재의 북한 주민 식단구성으로는 며칠 혹은 몇 주일은 살 수 있겠으나 영양실조가 몇 달 동안 지속되면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될 수 있다고 함.
- WFP는 2,400만 북한 주민이 기본적인 식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올해 180만 톤에

가까운 식량을 수입하거나 원조 받아야 하며, 금년에는 작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까지 식량난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힘.

- WFP는 현재 긴급구호활동에 필요한 5억 400만 달러 가운데 15%밖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수백만 명에 대한 식량 원조를 중단하였으며 오는 11월 이후까지 추가 기부가 없을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원을 호소함.
- 지난 7월에는 당초 계획한 620만 명 가운데 130만 명의 북한 주민만이 WFP의 식량지원 혜택을 받았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북한 여성 3분의 1 영양실조,” 2009. 9. 7)

□ WFP, 북한 식량 180만 톤 부족 예상

-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우리 정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WFP는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우리 정부가 750만 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짐.
- WFP는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WFP가 북한에 설립한 식품공장에서 원료로 쓸 콩, 분유, 비타민, 미네랄 등의 구입비용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음.
- 우리 정부는 당국 차원의 대북 쌀 차관과는 별개로 2001~04년 동안 WFP를 통해 매년 옥수수 1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도 WFP를 통해 콩, 옥수수 등 32,000톤(2,0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한 바 있음.
- 2007년 WFP는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에 6,000만 달러를 기증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에 동참하지 않았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정부에 대북지원 동참 요청,” 2009. 9. 20)

□ FAO, 북한 식량 180만 톤 부족 예상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작황이 예년보다 감소해 북한이 앞으로 170~180만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의 올해 예상 쌀 수확량은 240~26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옥수수 수확량도 130~200만 톤으로 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함.
 - FAO의 키산 군장 식량안보 분석관은 올해 북한에 비도 적당히 오고 특별한 자연 재해가 없는 등 농사짓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지만 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고 농기계가 낙후되어 생산량이 떨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함.
- 최근 방북했던 김순권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도 올해 북한의 옥수수 수확량이 평년의 250만 톤에 비해 무려 100만 톤 이상 줄어든 것으로 예상함.
 - 지난 9월 12일 방북하여 16일까지 평양 외곽 미림구역과 평안북도 묘향산 등을 돌면서 옥수수 작황을 점검한 김순권 이사장은 옥수수 꽃이 피는 7월은 작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데 비가 오지 않았고 그 후엔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습해를 받았다고 말함.
 - 옥수수는 비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인데 올해 충분한 비료가 공급되지 않았으며 북한이 자급비료를 최대한 조달코자 하였지만 축산이 발달하지 않아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도 없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FAO, 北 식량 180만t 부족,” 2009. 9. 24)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옥수수 40% 감산 우려..심각한 상황,” 2009. 9. 22)

□ UNDP, 평양서 대북사업 재개식 열어

- 지난 2007년 3월 이래 중단되었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이 재개되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유엔개발계획이 대북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난 9월 30일 평양에 있는 유엔개발계획대표부에서 가졌다고 전함.
- UNDP 집행이사회는 지난 2009년 1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북한사업 추진과정에서 자금을 전용했다는 의혹 때문에 2년 반 가까이 중단되었던 대북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UNDP는 1981년부터 북한에서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자료: <http://nk.chosun.com> (조선일보, “UNDP, 평양서 대북사업 재개식 열어,” 2009. 9. 30)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북한 주민의 1/3이 굶주리는 심각한 식량 상황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400만 북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식량난으로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북한의 인원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2008년 12월 발표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북한 인구 가운데 900만 명이 식량부족으로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북한 주민의 70%가 공공식량배급제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배급량을 줄이고 있어 주민들은 하루 필요한 에너지의 1/3밖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 WFP는 심각한 기금부족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음.
- 북한의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5억 400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하지만 지난 7월까지 7,500만 달러밖에 모금하지 못한 실정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반총장, 北 식량난 심각..3분의 1 굶주려,” 2009. 10. 2)

□ 북한, 벼·감자에 친환경 보존농법 도입 확대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티어도어 프리드리히 곡물생산체계 강화 담당관은 북한이 마다가스카르에서 개발된 ‘벼 강화체계’라는 벼 재배법을 도입하여 수확량이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재배법을 확대하고 있다고 함.
- 1980년대 개발된 이 재배법은 벼의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것으로 물의 사용과 종자를 줄이면서 벼의 생육을 강화하여 수확량을 늘리는 혁신적인 벼농사 기법으로 알려짐.
- 2003년 북한이 이 재배법을 시험하여 효과를 확인한 뒤 기술을 확대하고 있음.
- 프리드리히 담당관은 금년 9월 평안북도 박천군, 평안남도 대동군, 강원도 안변군의 협동농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쌀 생산이 안정을 보였다고 전함.

- 프리드리히 담당관이 가을 쌀 추수가 막 시작될 즈음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 주변을 둘러본 결과 평양 주변 200km 내의 쌀농사는 비교적 좋았다고 함.
- 북한의 농업부는 FAO의 기술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농업과학원도 FAO의 기술협력사업에 협조하고 있음.
- 북한은 토양 위에 벚짳을 덮고 거기에 감자를 심는 친환경 보존농업식 감자재배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유엔이 북한에 전수한 무경작 보존농법은 비료를 주는 대신 작물 그루터기를 남겨 분해시키면서 수분을 더 잘 보존하여 물의 사용도 줄이고 쟁기질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토양의 양양분을 만드는 미생물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임.
- 이 농법을 도입한 협동농장에서는 비료, 노동력, 연료의 사용량이 감소하고 집중호우나 가뭄에도 수확량이 비교적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 북한의 30개 이상 협동농장에서 이 농법을 실시하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북, 벼·감자에 친환경 보존농업 도입 확대,” 2009. 10. 20)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정부, 대북 지원 민간단체에 35억원 지원

-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35억 원을 지원키로 함.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10개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남북협력기금 약 35억 7,300만 달러(사업운영비 포함)를 지원키로 함.
- 2008년 정부는 37개 단체의 40개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음.
- 이번의 기금 지원 대상은 주민생활 기여도,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영유아,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힘.
- 주요 지원대상은 ‘등대복지회’의 북한 장애인 어린이 종합복지지원, ‘유진벨’의 결핵퇴치 및 결핵병원지원, ‘한국제이티에스’의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의료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의료 지원, ‘남북나눔’의 북한 어

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지원사업 등이 포함됨.

- 경기도는 2008년 북한에 식량지원을 포함하여 양묘장 조성,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의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식량을 제외한 양묘, 의약품을 지원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민간대북지원단체에 35억원 지원” 2009. 8. 3)

□ 경기도, 2년 1개월 만에 북한에 식량지원 재개

- 경기도가 2년 1개월 만에 북한에 식량지원을 재개함.
 -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측이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가 대북 식량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함.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 지원금에 자체 모금한 성금 등을 더해 중국에서 통옥수수 4,200톤을 구입하여 지난 9월 1일 북한에 전달함.
 - 경기도는 2007년 8월 북한에 홍수가 발생하여 밀가루와 라면 등 1억 원 상당의 식량을 전달한 바 있음.
- 경기도는 2008년 북한에 식량지원을 포함하여 양묘장 조성,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의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식량을 제외한 양묘, 의약품을 지원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경기도, 2년1개월만에 북 식량지원 재개” 2009. 9. 2)

□ 북한에서 키운 통일딸기 모종 경남 도착

- 경남에서 배양하고 평양에서 증식한 통일딸기 모종 10만 포기가 경남에 돌아옴.
 - 김태호 경남지사와 전강석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회장은 9월 23일 경남도청에서 북한에서 도착한 딸기 모종을 재배 농가들에게 전달함.
 - 이 딸기모종은 사천시 곤양면과 밀양시 하남읍, 상남면에 있는 8농가의 비닐하우스 17,000 m²에 이식되어 내년 1월 수확에 들어갈 예정임.

- 내년 3월까지 37,000kg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통일딸기’ 브랜드로 판매될 예정임.

○ 통일딸기 모종이 경남에 전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임.

- 2006년 평양에서 자란 통일딸기 모종 10,000포기가 경남에 전달되었으며 2007년에는 25,000포기가 전달됨.
- 2008년에는 50,000포기가 인천항까지 운송되었으나 검역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전량 소각됨.
- 그 동안 진주에서 조직배양을 하는 그린토피아에서 3~4cm가량 키운 모주를 북한에 보내 증식시킨 다음 다시 모종을 경남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협력사업이 진행되어 왔음.
- 경남에서 보낸 딸기 모주는 지난 4월 20일 평양시 순안구역 천동국영농장에 도착하여 경남에서 지원한 농자재를 이용하여 국영농장원들이 증식한 것임.
- 검역과정을 고려하여 토양번식을 하지 않고 포트에 심은 채 번식시켜 흙을 씻은 상태에서 모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천항에 도착한 후 10여일이 지나야 경남도 전달되는 등 반입 절차가 까다로움.

자료: <http://nk.chosun.com> (조선일보, “북에서 키운 통일딸기 모종 경남 도착” 2009. 9. 23)

□ 러시아, 북한에 식량 지원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다고 보도함.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기증한 식량이 함경북도 라진항에 도착했다며 지난 9월 25일 현지에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전함.
-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의 식량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음.
- 러시아는 인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9,980 톤의 밀가루를 전달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러시아, 북에 식량지원” 2009. 9. 26)

<http://www.reliefweb.int>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humanitarian aid to DPRK, Sep. 25, 2009)

□ 베트남, 북한에 쌀 지원

- 베트남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베트남 정부에서 북한에 보낸 쌀이 9월 28일 남포항에 도착했다며 베트남 정부는 북한의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식량을 기증했다고 밝힘.
 - 지난 9월 25일에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식량이 라선항에 도착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음.
-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9월 28일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이나 비료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북한은 올해 비료부족과 가뭄 등으로 인해 특히 옥수수의 작황이 나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예년보다 감소해 내년 북한은 170~180만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전망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베트남, 북에 쌀지원..북 매체 잇단 지원 보도” 2009. 9. 28)

□ 중국 원자바오 총리, 김정일과 회담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10월 4일 북중 수교 60주년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함.
 - 원자바오 총리는 사흘간 평양에 머물면서 북한의 핵 폐기 협상 복귀 여부와 무상원조 제공 등 북-중 경제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됨.
 -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방북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 중국 정상급 인사로는 지난 2005년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방문이후 4년 만임.
 -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무상원조를 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경기도 대북사업비 전년보다 1.3배 증가,” 2009. 10. 4)

□ 경기도 대북사업비 전년보다 증가

-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2009년 남북교류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30% 증가함.
 - 경기도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경기도가 집행한 대북사업비는 41억원으로 지난해의 연간 사업비 17억 8,200만원의 2.3배임.
 - 경기도의 2009년 대북사업비는 60억 원 편성되어 있음.
- 경기도는 2009년 개풍양묘장에 양묘하우스 2개 동 설치비를 지원하고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평양에 양돈장 조성사업 진행함.
 - 경기도는 앞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과 사회, 문화, 체육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경기도 대북사업비 전년보다 1.3배 증가,” 2009. 10. 14)

□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 논란

- 남북관계 개선 조짐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 3~5년간은 매년 식량 100만 톤 이상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함.
 -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대북 지원은 상호주의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군포로, 남북한 문제의 해결, 이산가족의 고향 성묘 허용, 이산가족 면회소 상봉의 정례화에 맞춰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를 적절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며 정부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생존을 지원하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상호주의적 연계론에 동의함.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 및 군사적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고 비판함.
 - 권용찬 국제기가대책기구 사무총장 역시 정부가 인도적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함.

-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식량 및 의약품 지원은 인도적 원칙을 우선하되 대규모 식량과 비료 지원은 북한의 농업 개혁 등 정책 변화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 논란,” 2009. 10. 15)

□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동

- 경남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던 양산시가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설 계획임.
- 양산시는 10월 20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시 예산으로 확보한 3천만의 기금을 농업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용기로 결정함.
- 도내 대북지원 민간단체 가운데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민간단체를 선정기로 함.

자료: <http://nk.chosun.com> (조선일보,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첫 발걸음,” 2009. 10. 21)

□ 올해 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 급감

- 올해 정부가 남한의 민간단체나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한 남북협력기금은 10월 현재 57억 원으로 지난 2007년의 367억 원, 2008년의 262억 원에 비해 크게 감소함.
- 이 때문에 어린이와 임산부 사망률 감소, 영양 장애율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취약계층 건강지원사업에서 식량지원은 목표의 39%에 그쳤으며 어린이 설사치료제 지원은 연간 필요량의 50%만 공급됨.
- 이 외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대상의 50%에게 6개월로 제한되었으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식 지원도 목표의 25%에 그침.
- 민간단체의 의약품 지원은 후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고 국제기구는 필수약품만 지원하기 때문에 중증환자의 치료가 곤란함.
- 따라서 정부의 대북 의약품 지원이 필요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올해 대북 보건의료 지원 급감,” 2009. 10. 22)

□ 정부, 민간 대북 지원사업에 9억여원 지원

- 한국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북한 취약계층과 영유아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9억 4,900만원을 지원기로 함.
 - 통일부는 10월 26일 민간 대북지원단체의 개별사업 중 취약계층과 영유아 대상 사업에 대한 제2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 이번에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나눔인터내셔널, 어린이재단, 장미회 등임.
- 정부는 지난 8월에 10개 단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35억 7,300만원(사업운영관리비 포함)을 지원기로 의결한 바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정부, 민간 대북지원사업에 9억여원 지원,” 2009. 10. 26)

□ 한국 정부, 북한에 옥수수 1만 톤 지원

- 한국 정부는 10월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옥수수 1만 톤을 지원기로 방침을 정함.
 - 형식상 이번 지원의 주체는 대한적십자사이지만 옥수수 1만 톤의 구입과 포장, 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약 40억 원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기로 함.
 - 옥수수와 함께 지원되는 분유 20톤(약 1억 5천 만 원 상당)과 의약품은 대한적십자사가 자체 조달함.
 - 북한이 한국의 옥수수 지원을 수용할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0~4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지원은 지난 10월 16일 북한이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공식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수용하면 곧바로 지원에 착수할 예정임.
 - 당초 북한은 식량 10만 톤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우리 정부는 옥수수 1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함경북도에만 전달하도록 요구조건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식량 분배 관련 단서 조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이 인도지원의 주도권을 확보

하겠다는 의미임.

- 한국 정부는 2008년 5월 북한에 옥수수 5만 톤 지원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이 거절하여 대북 지원이 실행되지 못하였음.
-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제의하면서 품목을 옥수수로 택한 이유는 옥수수가 쌀에 비해 군대나 고위층들에게 분배될 가능성이 적어 분배의 투명성 좀 더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한적을 통한 정부의 대북 옥수수 1만 톤 지원은 정부의 대북지원이 개시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더 큰 지원과 대화를 위한 펌퍼질의 마중물 역할로 봐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부여함.
-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식량사정,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가 개최 등 북한의 협조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음.
- 한적은 이번 남북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한 대북 지원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정부, 북에 옥수수 1만t 지원키로,” 2009. 10. 27)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첫 대북식량지원 왜 옥수수 선택했나,” 2009. 10. 27)

<http://news.donga.com> (동아일보, “북 식량 10만t 요구했지만 옥수수 1만t만 지원,” 2009. 10. 29)

<http://nk.chosun.com>(조선일보, “한적, 옥수수 1만t은 마중물 역할,” 2009. 10. 26)

북중 교역 동향

1.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07/08~2008/09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08.11	0	0	0	72	0	5,748	5,820
12	0	0	0	252	0	252	504
2009.01	0	0	905	0	368	0	1,273
2	0	609	1,432	0	272	0	2,313
3	122	354	2,297	0	739	1,551	5,063
4	0	371	1,250	0	430	3,512	5,563
5	0	3,745	2,474	21	927	5,171	12,338
6	0	7,483	2,061	63	584	500	10,691
7	0	1,885	2,483	0	3,203	45	7,616
8	-	-	-	-	-	-	-
9	-	-	-	-	-	-	-
10							
누 계	122	14,447	12,902	408	6,523	16,779	51,181
2007.11	0	2,880	1,570	164	3,527	840	8,981
12	0	1,758	7,217	164	5,350	72	14,561
2008. 1	0	547	3,707	0	1,770	674	6,698
2	0	6,875	2,976	2	0	1,331	11,184
3	160	4,300	38	0	0	7,166	11,664
4	0	0	0	0	0	97	97
5	0	0	0	0	0	166	166
6	0	11,504	0	0	0	0	11,504
7	0	4,410	0	0	0	0	4,410
8	0	0	0	30	0	38	68
9	0	0	0	73	0	1,037	1,110
10	0	0	0	0	0	438	438
누 계	160	32,274	15,508	433	10,647	11,859	70,881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07/08~2008/09

단위 : 수입량(천 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08.11	0	0	0	179	0	7,731	7,910
12	0	0	0	600	0	315	915
2009.01	0	0	2,621	0	1,248	0	3,869
2	0	2,670	4,022	0	928	0	7,620
3	350	1,492	6,191	0	2,352	3,277	13,662
4	0	1,574	3,474	0	1,431	8,903	15,382
5	0	15,966	6,489	54	2,942	12,566	38,017
6	0	30,884	5,331	155	1,872	829	39,071
7	0	7,748	6,419	0	10,545	75	24,787
8	-	-	-	-	-	-	-
9	-	-	-	-	-	-	-
10							
누 계	350	60,334	34,547	988	21,318	33,696	151,233
2007.11	0	14,588	5,053	360	13,527	1,413	34,941
12	0	9,065	21,834	447	20,349	74	51,769
2008. 1	0	2,548	11,116	0	6,642	1,093	21,399
2	0	27,588	8,864	21	0	2,782	39,255
3	390	16,132	99	0	0	14,963	31,584
4	0	0	0	0	0	123	123
5	0	0	0	0	0	210	210
6	0	37,111	0	0	0	0	37,111
7	0	14,227	0	0	0	0	14,227
8	0	0	0	67	0	45	112
9	0	0	0	150	0	1,140	1,290
10	0	0	0	0	0	600	600
누 계	390	121,259	46,966	1,045	40,518	22,443	232,621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09년 7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24,787톤의 곡물을 수입함.
 - 이는 5월이나 6월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임.
 - 7월 곡물 수입 특징은 옥수수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밀가루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임.
 - 중국은 2009년 8월 이후 북중 교역 통계를 대외에 발표하지 않고 있음.
 - 2008년 8월의 북한은 중국에서 거의 식량을 수입하지 않았으며 그 이전 연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임.
 - 통상 8월 이후 이듬해 2월까지의 곡물 수입량이 많지 않음.
 - 8월 이후 곡물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가을 수확 시기가 가깝기 때문이며 곡물부족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재고 처리와 더불어 조만간 수확할 곡물을 소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009양곡연도(2008.11~2009.7) 중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류의 총량은 151,233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30,619톤에 비해 감소하였음.
 - 곡물류의 수입액도 2008 양곡연도의 6,926만 달러에서 5,118만 달러로 감소함.
 - 2009양곡연도의 품목별 수입 특징을 2008년과 비교하면 2009년은 옥수수, 쌀, 밀가루의 수입량이 감소한 반면 두류의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곡종별 수입단가를 비교하면 보리와 옥수수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수입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쌀, 잡곡, 밀가루의 수입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두류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09양곡연도의 곡종별 수입 단가를 비교하면 두류가 톤당 498달러로 가장 높으며 이어 잡곡 413달러, 쌀 373달러, 보리 349달러, 밀가루 306달러, 옥수수 239달러 순임.

2.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7/08~2008/09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08.11	0	0	0	0	0
12	1,057	0	0	1	1,058
2009.01	6,347	0	0	2	6,349
2	1,570	0	0	31	1,601
3	15	0	0	5	20
4	841	0	0	16	857
5	677	0	0	8	685
6	2,396	0	0	1	2,397
7	10,240	0	0	0	10,240
8	-	-	-	-	-
9	-	-	-	-	-
10					
누 계	23,143	0	0	64	23,207
2007.11	0	0	0	0	0
12	0	0	0	0	0
2008. 1	160	0	0	1	161
2	881	0	0	0	881
3	1,276	0	10	38	1,324
4	1,027	0	1	45	1,073
5	1,919	0	0	1	1,920
6	2,176	0	0	30	2,206
7	4,091	0	0	2	4,093
8	4	0	0	0	4
9	0	0	0	0	0
10	0	0	0	0	0
누 계	11,530	0	11	117	11,662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7/08~2008/09

단위 : 수입량(천 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08.11	0	0	0	0	0
12	3,698	0	0	5	3,703
2009.01	21,900	0	0	5	21,905
2	5,486	0	0	40	5,526
3	59	0	0	8	67
4	6,001	1	0	32	6,034
5	4,589	0	0	10	4,599
6	20,745	0	0	3	20,748
7	46,534	0	0	0	46,534
8	-	-	-	-	-
9	-	-	-	-	-
10					
누 계	109,012	1	0	103	109,116
2007.11	0	0	0	0	0
12	0	0	0	0	0
2008. 1	632	0	0	3	635
2	2,525	0	0	0	2,525
3	3,800	0	22	117	3,939
4	2,765	0	4	157	2,926
5	5,645	0	0	1	5,646
6	5,738	0	0	40	5,778
7	6,365	0	0	7	6,372
8	10	0	0	0	10
9	0	0	0	0	0
10	0	0	0	0	0
누 계	27,470	0	26	325	27,831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북한은 2009년 7월 중국으로부터 총 46,534톤의 화학비료를 수입함으로써 월 단위로는 연중 최고의 수입량을 기록함.
 - 7월의 비료 수입량은 6월의 2배 이상으로 비료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임.
 - 6월에는 가격이 저렴한 유안(황산암모늄)을 수입하였으나 7월에는 요소와 유안을 6:4 비율로 요소를 더 많이 수입함. 요소비료는 질소함량이 46%인데 비해 유안은 질소함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를 함유하고 있음.

- 2009양곡연도(2008.11~2009.7) 중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109,116톤의 비료를 수입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의 27,821톤과 비교할 때 4배의 수입량을 보이고 있음.
 - 수입된 비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질소 비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산과 칼리 비료는 수입 실적이 전혀 없음.
 - 북한은 금년에 자체 비료 생산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필요량에는 미치지 못함.
 - 이처럼 북한이 비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임.
 - 금년 수입된 비료의 평균 단가는 지난해의 톤 당 352달러에서 212달러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국제 비료가격의 하락추세에도 원인이 있지만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안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1999년부터 매년 30~35만 톤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08년에는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2009년에도 비료 지원이 중단되고 있음.
 - 북한은 금년에 홍남비료연합기업소를 통해 화학비료 생산을 크게 늘렸으며 최근 낙원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홍남비료연합기업소의 무연탄 가스화 공정에 사용할 대형 산소분리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이를 이용하여 화학비료를 추가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27개 관측지점의 7, 8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 평균 기온을 밑돌았으나, 9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 평균 기온에 비해 높았음.
 - 27개 관측지점의 7월과 8월의 평균 기온은 각각 20.9℃와 22.2℃로 평년 평균 기온 21.9℃와 22.4℃에 비해 각각 1.0℃, 0.2℃ 낮았으며, 9월의 평균 기온은 17.8℃로 평년의 평균 기온인 17.0℃에 비해 0.8℃ 높았음.
- 7월의 평균 기온은 많은 지역에서 평년 평균 기온에 비해 1℃ 이상 낮았으나 8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음. 9월의 평균 기온은 많은 지역에서 평년 평균 기온에 비해 1℃ 이상 높았음. 이에 따라 가을작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9월의 높은 기온은 벼와 옥수수의 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곡물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강수량

- 7월은 27개 관측지점의 평균 강수량이 293.8mm로 평년 평균 강수량 227.0mm에 비해 66.8mm나 높았으나 8~9월 평균 강수량은 147.3mm, 26.7mm로 평년 평균 강수량 191.6mm, 104.2mm를 훨씬 밑돌았음. 8~9월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낮은 강수량을 나타냄으로써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됨.
 - 금년은 집중 호우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 유실, 매몰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음.
 - 9월 강수량이 평년의 1/4에 불과하였으며 북부 지방은 강수량이 현저히 낮아 일부 발작물의 가뭄 현상이 우려됨.
- 9월의 강우 일수가 적었던 점은 벼와 옥수수의 생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등숙을 좋게 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됨.
 - 다만 채소 등 발작물의 경우 9월의 낮은 강수량은 가을가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10월까지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경우 김장채소의 생산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누적강수량, 7~9월

(단위 :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259.1 (375.5)	370.7 (429.6)	159.4 (304.9)	295.0 (365.3)	303.8 (304.6)	274.4 (432.5)	320.1 (358.1)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239.7 (327.9)	287.5 (536.6)	437.8 (393.9)	263.3 (538.6)	353.3 (699.5)	692.3 (690.9)	420.6 (466.0)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고성
286.8 (414.2)	563.7 (610.7)	579.9 (568.4)	642.3 (747.4)	597.6 (503.0)	457.1 (497.3)	616.7 (784.3)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450.0 (536.6)	814.1 (658.5)	609.4 (530.1)	487.3 (600.7)	751.1 (687.4)	1,098.7 (753.4)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 °C(기온), mm(강수량))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7월	기 온	22.9 (23.5)	23.4 (24.0)	23.4 (23.4)	18.5 (19.9)	21.4 (22.1)	21.6 (22.5)
	강수량	422.0 (296.9)	473.2 (243.5)	274.6 (263.5)	104.3 (111.3)	243.4 (193.1)	414.3 (261.0)
8월	기 온	24.5 (23.9)	24.8 (24.1)	25.0 (24.5)	21.7 (21.7)	22.6 (22.8)	22.3 (23.2)
	강수량	122.4 (214.6)	105.1 (176.4)	189.7 (214.0)	35.0 (128.8)	111.3 (177.7)	191.4 (286.8)
9월	기 온	19.5 (18.4)	20.5 (18.8)	21.4 (20.0)	17.8 (17.5)	19.1 (18.1)	19.4 (18.8)
	강수량	19.3 (99.2)	19.3 (83.1)	23.0 (123.2)	20.1 (64.8)	65.9 (95.2)	36.6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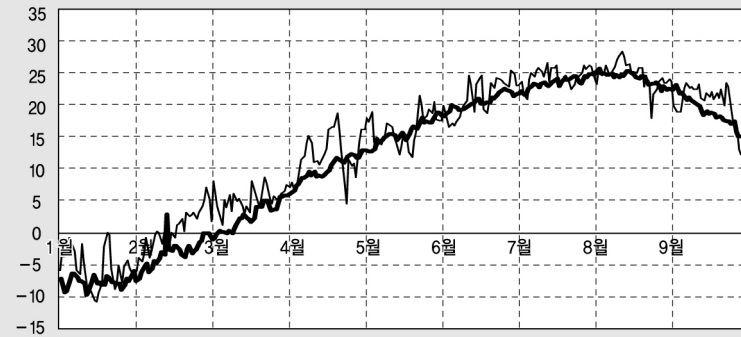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고성,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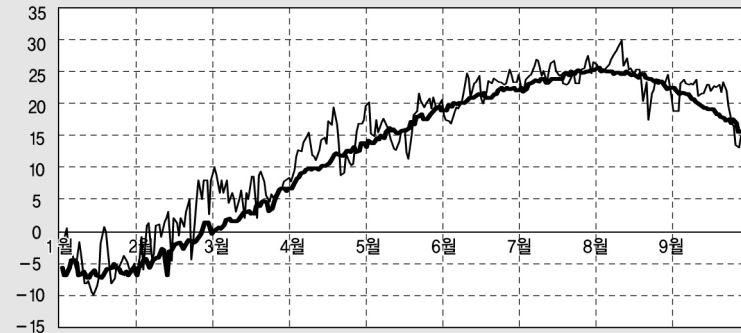
안주

기온(°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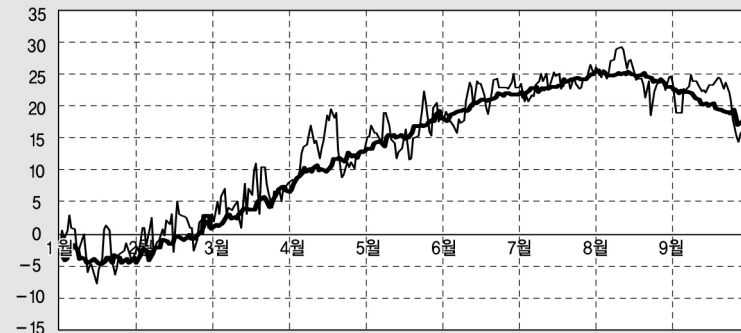
평양

기온(°C)



해주

기온(°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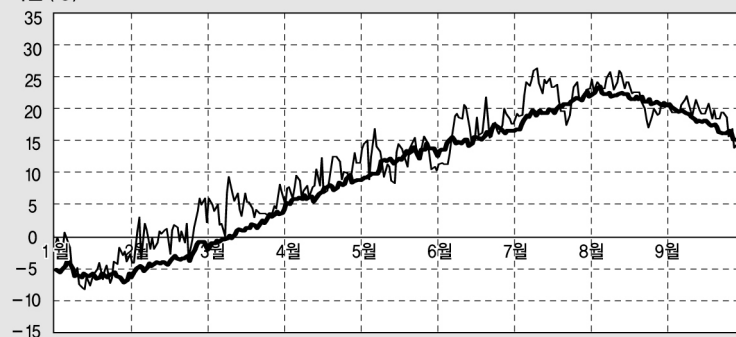


— 09년

— 평년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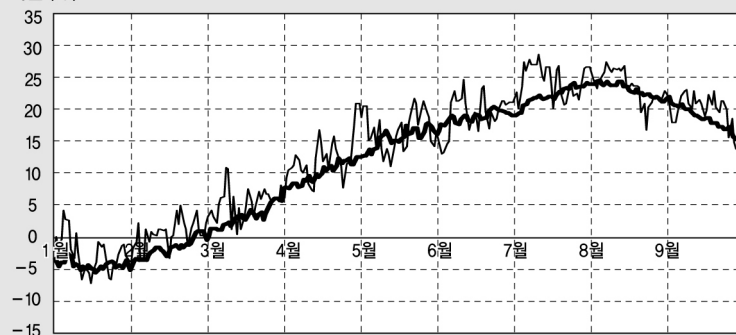
청진

기온(°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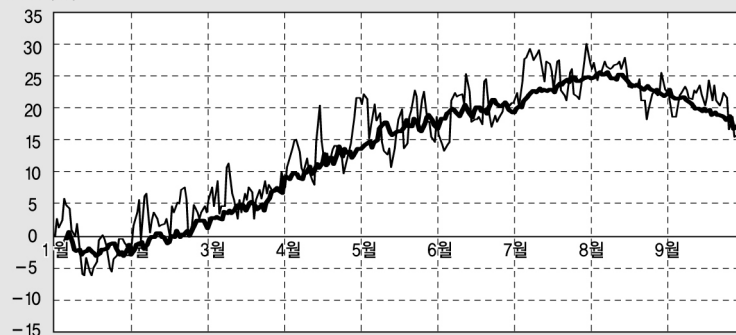
함흥

기온(°C)



원산

기온(°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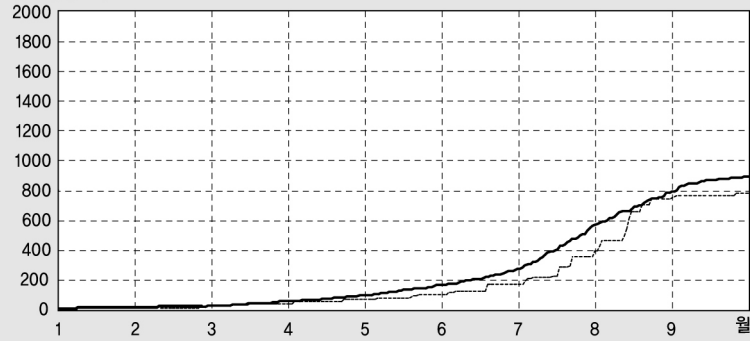
— 09년

— 평년기온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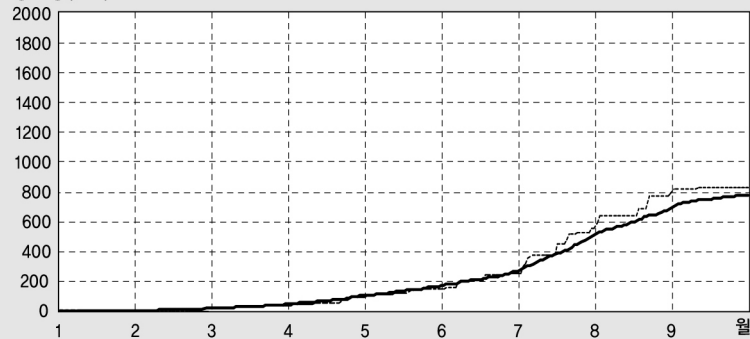
안주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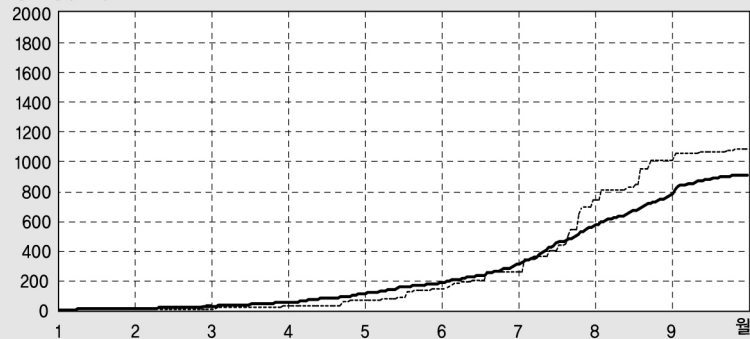
평양

강수량(mm)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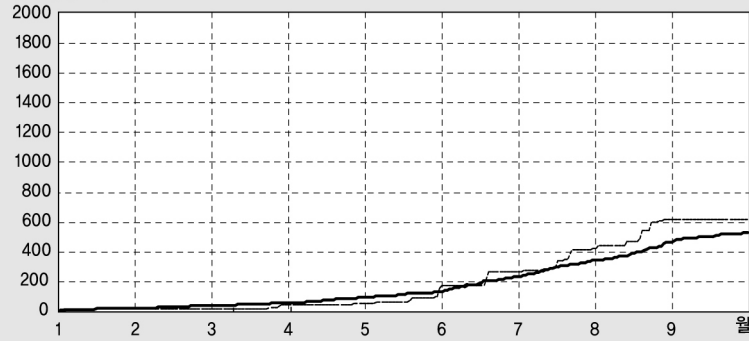
강수량(mm)



..... 2009년 강수량 — 평년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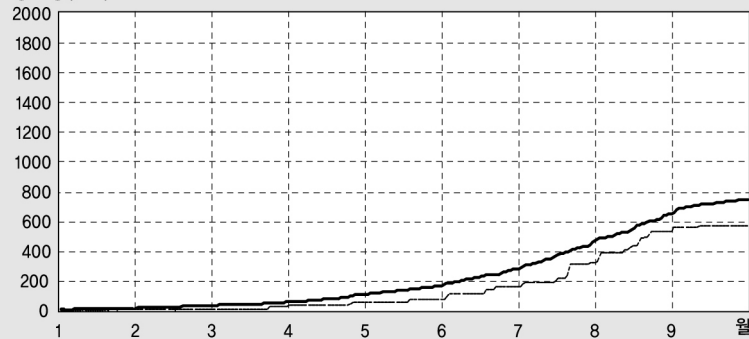
청진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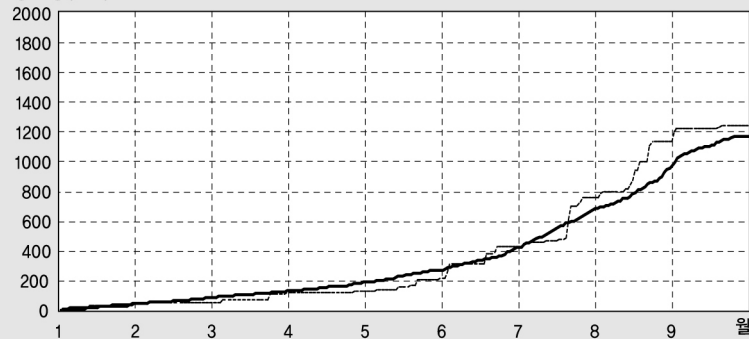
함흥

강수량(mm)



원산

강수량(mm)



..... 2009년 강수량 — 평년기온

E02-2009-0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1권 제3호

찍 은 날	2009. 10.	펴낸날	2009. 10.
발 행 인	오 세 익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